

아크로 리버스카이 입주자모집공고(정정)



※ 2026.05.15.(금) 정정공고한 「아크로 리버스카이」 입주자모집공고를 2026.05.21.(목)일자로 정정공고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Ⅲ)

구분	정정내용							
정정 전	해당 페이지	구분	품목	약식표기(타입)	구성	판매가격	비고	
	62 페이지	거실 업그레이드	공통	디자인 월	84C	거실/복도면(기본 제공 및 냉장고자리 제외)	2,930,000	-
				디자인 월 ※아일랜드장 선택시	84C	거실/복도면(기본 제공 및 냉장고자리 제외)	2,850,000	-
	72 페이지	빌트인 가전 업그레이드	실별 환기·공기청정 시스템	59A, 59B, 84A, 84B, 84C, 84T1, 84T2	D-에어플래너	4,830,000	※스마트홈 연계조명 시스템 미선택 시	
				140P				7,000,000
	정정 후	해당 페이지	구분	품목	약식표기(타입)	구성	판매가격	비고
63 페이지		거실 업그레이드	공통	디자인 월	84C	거실/복도면(기본 제공 및 냉장고자리 제외)	2,850,000	-
				디자인 월 ※아일랜드장 선택시	84C	거실/복도면(기본 제공 및 냉장고자리 제외)	2,930,000	-
73 페이지		빌트인 가전 업그레이드	실별 환기·공기청정 시스템	59A, 59B, 84A, 84B, 84C, 84T1, 84T2	D-에어플래너	4,830,000	※스마트홈 연계조명 시스템 선택 시	
				140P				7,000,000

※ 2026.05.13.(수) 공고한 「아크로 리버스카이」 입주자모집공고를 2026.05.15.(금)일자로 정정공고 합니다.

■ 유의사항 및 단지 내외부 여건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11. 유의사항 및 단지 내외부 여건	일반사항	-	79페이지 일부 문구 강조(내용 변경 없음)
	인·허가 및 설계관련 유의사항	-	82, 83, 84페이지 일부 문구 강조(내용 변경 없음)
	단지 및 주변여건 관련 유의사항	-	86페이지 일부 문구 강조(내용 변경 없음)
	단지 내부 여건 유의사항	-	90페이지 일부 문구 강조(내용 변경 없음)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2-529-0205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4.05.13. 이전부터 계속 현재 거주자)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계속 거주자,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10년	3년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해당지역	기타지역				
일정	2026.05.13.(수)	2026.05.26.(화)	2026.05.27.(수)	2026.05.28.(목)	2026.05.29.(금)	2026.06.05.(금)	2026.06.09.(화) ~ 2026.06.12.(금)	2026.06.20.(토) ~ 2026.06.24.(수)

1 공통 유의사항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내 분양 상담전화(02-529-0205) 및 사이버 주택전시관(<https://www.acro.co.kr>)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 및 청약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문의전화 폭주로 인하여 상담전화 연결이 안될 경우가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또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 등의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에 따른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0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24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필요	필요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을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사이버 주택전시관(<https://www.acro.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정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중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 단, 일부 은행에 한하여 중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사항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제출하는 서류 중 제2항제2호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2항 제7호의 출입국사실증명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5.13(수)**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가(2024.05.13.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서류접수 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서류접수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계약체결
		해당지역	기타지역				
일 정	2026.05.26.(화)	2026.05.27.(수)	2026.05.28.(목)	2026.05.29.(금)	2026.06.05.(금)	2026.06.09.(화) ~ 2026.06.12.(금) 4일간 10:00 ~ 17:00	2026.06.20.(토) ~ 2026.06.24.(수) 5일간 10:00 ~ 17:00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주택전시관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PC·모바일) 청약홈	• 아크로 리버스카이 주택전시관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741(도곡동 180-3번지)] • 문의 : ☎ 02-529-0205 ※ 자격확인서류 및 예약관련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참고 ※ 접수된 서류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기간 및 장소 등은 별도 공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주택전시관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람,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 및 1순위, 2순위 모두 청약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10년

- ※ (예외1)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재당첨 제한 시작일이 혼인 전인 경우에는 당첨자발표일 기준 배우자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 (예외2) 2025.03.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청약신청자 본인의 재당첨 제한 시작일이 혼인 전인 경우에는 당첨자발표일 기준 본인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당첨 가능합니다(혼인특례 사용하여 청약신청).
- ※ (예외3)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세대원간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3년(단,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 향후 1순위 자격 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공급되는 주택의 1순위 접수가 제한됩니다
- 가점제 당첨 제한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또한, 당첨자 본인 및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당첨제한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6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 전매금지, 가점제 당첨 제한 및 1순위자격 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예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동작구)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1호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부동산 거래의 신고 의무화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과열지역인 서울특별시 동작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증빙자료 포함)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계약자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의거 분양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연대하여 균등(각각 50%)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총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사업주체(시공사)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발코니확장 + 추가선택품목Ⅱ, Ⅲ)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의거 분양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또는 시공사)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각각 100%씩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총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사업주체(시공사) 부담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계약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우체국, 은행)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co.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1577-55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작구청 도시정비과-6708호(2026.05.0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23-61번지 일대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4층, 지상 29층, 10개동 총 987세대(조합원 522세대, 임대 172세대, 보류지 8세대 포함) 중 일반분양 285세대 [특별공급 153세대(기관추천 28세대, 다자녀가구 19세대, 신혼부부 67세대, 노부모부양 8세대, 생애최초 3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9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타입)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6000116	01	036.9596	36A	36.9596	14.7087	51.6683	37.3461	89.0144	22.1025	43	4	-	12	1	6	23	20	6
			36B	36.9596	14.7087	51.6683	37.3461	89.0144	22.1025									
	02	044.7166	44A	44.7166	16.8698	61.5864	45.1840	106.7703	26.3450	9	1	-	2	-	2	5	4	1
			44B	44.7166	16.8698	61.5864	45.1840	106.7703	26.3450									
	03	051.8088A	51A	51.8088	18.4432	70.2520	52.3506	122.6026	30.0517	9	1	-	2	-	2	5	4	1
	04	051.7802B	51B	51.7802	18.6735	70.4537	52.3217	122.7754	30.1380	8	1	-	2	-	2	5	3	-
	05	051.7611C	51C	51.7611	19.0948	70.8559	52.3022	123.1581	30.3100	22	2	-	6	1	3	12	10	3
	06	059.9912A	59A	59.9912	22.3644	82.3556	60.6184	142.9739	35.2292	11	1	1	2	-	1	5	6	4
	07	059.9866B	59B	59.9866	22.1423	82.1289	60.6125	142.7414	35.1323	5	-	-	1	-	-	1	4	1
	08	084.9549A	84A	84.9549	30.7015	115.6564	85.8429	201.4993	49.4743	73	7	7	17	3	7	41	32	14
	09	084.9645B	84B	84.9645	30.3087	115.2732	85.8522	201.1253	49.3104	59	6	6	14	2	5	33	26	4
	10	084.9145C	84C	84.9145	29.9799	114.8944	85.8019	200.6964	49.1484	37	4	4	8	1	3	20	17	1
11	084.9898T	84T1	84.9898	30.2607	115.2505	85.8794	201.1300	49.3010	6	1	1	1	-	-	3	3	3	
		84T2	84.9898	30.2607	115.2505	85.8794	201.1300	49.3010										
12	140.8560P	140P	140.8560	50.7074	191.5634	142.3295	333.8928	81.9456	3	-	-	-	-	-	-	3	-	
합 계										285	28	19	67	8	31	153	132	38

※ 036.9596 주택형의 경우 면적은 동일하나, 설계도서상 36A와 36B 타입은 좌우 대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044.7166 주택형의 경우 면적은 동일하나, 설계도서상 44A와 44B 타입은 실외기실 및 발코니 위치와 측벽 창호 유무에 따라 구분되어 있습니다.

※ 084.9898T 주택형의 경우 면적은 동일하나, 설계도서상 84T1과 84T2 타입은 1, 2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형 036.9596, 044.7166, 084.9898T 중 36, 44, 84T는 2개(A,B타입 & 1,2타입) 타입을 일괄 공급하고 주택형 특히 44 타입의 경우 타입별(A,B 타입) 실외기실 및 발코니 위치와 측벽 창호 유무가 상이하오니 청약신청 시 구조, 실별 위치, 창호 유무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시 주택형의 혼동으로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036.9596 주택형은 36A, 36B 타입, 044.7166 주택형은 44A, 44B 타입, 084.9898T 주택형은 84T1, 84T2 타입으로 나뉘어 있으나 타입 선택이 불가하고 주택형으로만 청약이 가능하며 타입-동호수는 주택형 내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9조에 따라 소형평형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정물량을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배정합니다.

■ 주택형 표시안내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청약시)	036.9596		044.7166		051.8088A	051.7802B	051.7611C	059.9912A	059.9866B	084.9549A	084.9645B	084.9145C	084.9898T		140.8560P
약식표기(타입)	36A	36B	44A	44B	51A	51B	51C	59A	59B	84A	84B	84C	84T1	84T2	140P

• 청약 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전용면적 기준)'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주택전시관 및 홍보 제작물 등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 방법은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평형환산 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표기 방식(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 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벽체, 주동출입구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등 부대복리시설, 보안 및 설비관련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을 포함한 기타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 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수정리를 위한 오차는 일부 호수에 할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세대벽체면적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예정 건축시설물의 대지권(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배분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는 총 공급세대(285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각 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접수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편입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주택형]		036.9596	044.7166	051.8088A	051.7802B	051.7611C	059.9912A	059.9866B	084.9549A	084.9645B	084.9145C	084.9898T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	-	-	-	-	-	1	1	1	-	4	
	장기복무 제대군인	-	-	-	-	-	-	-	1	1	-	-	2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	1	1	2	1	-	1	1	1	-	9	
	중소기업 근로자	1	1	-	-	-	-	-	2	1	1	-	6	
	장애인	서울특별시	1	-	-	-	-	-	-	1	1	1	1	5
		경기도	-	-	-	-	-	-	-	1	-	-	-	1
인천광역시		-	-	-	-	-	-	-	-	1	-	-	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거주자(50%)	-	-	-	-	-	1	-	4	3	2	1	11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50%)	-	-	-	-	-	-	-	3	3	2	-	8	

신혼부부 특별공급	12	2	2	2	6	2	1	17	14	8	1	67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	-	-	1	-	-	3	2	1	-	8
생애최초 특별공급	6	2	2	2	3	1	-	7	5	3	-	31
합 계	23	5	5	5	12	5	1	41	33	20	3	153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9조에 따라 소형평형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정물량을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배정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주택형	약식 표기 (타입)	공급 세대 수	동별 (라인별)	층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지정일		
										계약시	2026.07.23.	2026.10.20.	2027.04.20.	2027.09.20.	2028.06.20.	2028.11.20.	2029.04.20.			
036.9596	36A	22	101동 5,7,9,11호 103동 3호	1층	3	744,438,000	315,562,000	-	1,060,000,000	50,000,000	56,000,000	106,000,000	106,000,000	106,000,000	106,000,000	106,000,000	106,000,000	106,000,000	318,000,000	
				2층	1	760,590,900	322,409,100	-	1,083,000,000	50,000,000	58,300,000	108,300,000	108,300,000	108,300,000	108,300,000	108,300,000	108,300,000	108,300,000	108,300,000	324,900,000
				3층	1	776,814,030	329,285,970	-	1,106,100,000	50,000,000	60,610,000	110,610,000	110,610,000	110,610,000	110,610,000	110,610,000	110,610,000	110,610,000	110,610,000	331,830,000
				4층	4	792,966,930	336,133,070	-	1,129,100,000	50,000,000	62,910,000	112,910,000	112,910,000	112,910,000	112,910,000	112,910,000	112,910,000	112,910,000	112,910,000	338,730,000
				5~9층	10	809,119,830	342,980,170	-	1,152,100,000	50,000,000	65,210,000	115,210,000	115,210,000	115,210,000	115,210,000	115,210,000	115,210,000	115,210,000	115,210,000	345,630,000
				10~19층	3	817,266,510	346,433,490	-	1,163,700,000	50,000,000	66,370,000	116,370,000	116,370,000	116,370,000	116,370,000	116,370,000	116,370,000	116,370,000	116,370,000	349,110,000
	36B	21	101동 6,8,10호 103동 2,4호	1층	3	744,438,000	315,562,000	-	1,060,000,000	50,000,000	56,000,000	106,000,000	106,000,000	106,000,000	106,000,000	106,000,000	106,000,000	106,000,000	106,000,000	318,000,000
				2층	1	760,590,900	322,409,100	-	1,083,000,000	50,000,000	58,300,000	108,300,000	108,300,000	108,300,000	108,300,000	108,300,000	108,300,000	108,300,000	108,300,000	324,900,000
				3층	2	776,814,030	329,285,970	-	1,106,100,000	50,000,000	60,610,000	110,610,000	110,610,000	110,610,000	110,610,000	110,610,000	110,610,000	110,610,000	110,610,000	331,830,000
				4층	2	792,966,930	336,133,070	-	1,129,100,000	50,000,000	62,910,000	112,910,000	112,910,000	112,910,000	112,910,000	112,910,000	112,910,000	112,910,000	112,910,000	338,730,000
				5~9층	8	809,119,830	342,980,170	-	1,152,100,000	50,000,000	65,210,000	115,210,000	115,210,000	115,210,000	115,210,000	115,210,000	115,210,000	115,210,000	115,210,000	345,630,000
				10~19층	5	817,266,510	346,433,490	-	1,163,700,000	50,000,000	66,370,000	116,370,000	116,370,000	116,370,000	116,370,000	116,370,000	116,370,000	116,370,000	116,370,000	349,110,000
044.7166	44A	3	103동 5,7,9호	1층	1	887,707,200	376,292,800	-	1,264,000,000	50,000,000	76,400,000	126,400,000	126,400,000	126,400,000	126,400,000	126,400,000	126,400,000	126,400,000	379,200,000	
				2층	1	907,020,450	384,479,550	-	1,291,500,000	50,000,000	79,150,000	129,150,000	129,150,000	129,150,000	129,150,000	129,150,000	129,150,000	129,150,000	387,450,000	
				3층	1	926,263,470	392,636,530	-	1,318,900,000	50,000,000	81,890,000	131,890,000	131,890,000	131,890,000	131,890,000	131,890,000	131,890,000	131,890,000	395,670,000	
	44B	6	102동 5호 109동 2호	4층	2	945,576,720	400,823,280	-	1,346,400,000	50,000,000	84,640,000	134,640,000	134,640,000	134,640,000	134,640,000	134,640,000	134,640,000	134,640,000	403,920,000	
				5~9층	1	964,889,970	409,010,030	-	1,373,900,000	50,000,000	87,390,000	137,390,000	137,390,000	137,390,000	137,390,000	137,390,000	137,390,000	137,390,000	412,170,000	
				10~19층	3	974,511,480	413,088,520	-	1,387,600,000	50,000,000	88,760,000	138,760,000	138,760,000	138,760,000	138,760,000	138,760,000	138,760,000	138,760,000	416,280,000	
051.8088A	51A	9	102동 6호 109동 3호	1층	1	1,084,913,040	459,886,960	-	1,544,800,000	50,000,000	104,480,000	154,480,000	154,480,000	154,480,000	154,480,000	154,480,000	154,480,000	154,480,000	463,440,000	
				2층	1	1,108,510,320	469,889,680	-	1,578,400,000	50,000,000	107,840,000	157,840,000	157,840,000	157,840,000	157,840,000	157,840,000	157,840,000	157,840,000	473,520,000	
				4층	2	1,155,704,880	489,895,120	-	1,645,600,000	50,000,000	114,560,000	164,560,000	164,560,000	164,560,000	164,560,000	164,560,000	164,560,000	164,560,000	493,680,000	
				5~9층	2	1,179,302,160	499,897,840	-	1,679,200,000	50,000,000	117,920,000	167,920,000	167,920,000	167,920,000	167,920,000	167,920,000	167,920,000	167,920,000	503,760,000	
				10~19층	3	1,191,030,570	504,869,430	-	1,695,900,000	50,000,000	119,590,000	169,590,000	169,590,000	169,590,000	169,590,000	169,590,000	169,590,000	169,590,000	508,770,000	

051.7802B	51B	8	103동 6호	3층	1	1,135,338,180	481,261,820	-	1,616,600,000	50,000,000	111,660,000	161,660,000	161,660,000	161,660,000	161,660,000	161,660,000	161,660,000	161,660,000	484,980,000			
				4층	1	1,159,005,690	491,294,310	-	1,650,300,000	50,000,000	115,030,000	165,030,000	165,030,000	165,030,000	165,030,000	165,030,000	165,030,000	165,030,000	165,030,000	165,030,000	495,090,000	
				5~9층	4	1,182,673,200	501,326,800	-	1,684,000,000	50,000,000	118,400,000	168,400,000	168,400,000	168,400,000	168,400,000	168,400,000	168,400,000	168,400,000	168,400,000	168,400,000	505,200,000	
				10~19층	2	1,194,471,840	506,328,160	-	1,700,800,000	50,000,000	120,080,000	170,080,000	170,080,000	170,080,000	170,080,000	170,080,000	170,080,000	170,080,000	170,080,000	170,080,000	510,240,000	
051.7611C	51C	22	102동 4호 103동 1호 109동 1호	1층	3	1,094,253,630	463,846,370	-	1,558,100,000	50,000,000	105,810,000	155,810,000	155,810,000	155,810,000	155,810,000	155,810,000	155,810,000	155,810,000	155,810,000	467,430,000		
				2층	2	1,118,061,600	473,938,400	-	1,592,000,000	50,000,000	109,200,000	159,200,000	159,200,000	159,200,000	159,200,000	159,200,000	159,200,000	159,200,000	159,200,000	159,200,000	477,600,000	
				3층	2	1,141,799,340	484,000,660	-	1,625,800,000	50,000,000	112,580,000	162,580,000	162,580,000	162,580,000	162,580,000	162,580,000	162,580,000	162,580,000	162,580,000	162,580,000	487,740,000	
				4층	3	1,165,607,310	494,092,690	-	1,659,700,000	50,000,000	115,970,000	165,970,000	165,970,000	165,970,000	165,970,000	165,970,000	165,970,000	165,970,000	165,970,000	165,970,000	497,910,000	
				5~9층	10	1,189,415,280	504,184,720	-	1,693,600,000	50,000,000	119,360,000	169,360,000	169,360,000	169,360,000	169,360,000	169,360,000	169,360,000	169,360,000	169,360,000	169,360,000	508,080,000	
				10~19층	2	1,201,284,150	509,215,850	-	1,710,500,000	50,000,000	121,050,000	171,050,000	171,050,000	171,050,000	171,050,000	171,050,000	171,050,000	171,050,000	171,050,000	171,050,000	171,050,000	513,150,000
059.9912A	59A	11	101동 2호 104동 1,2,3,4,6호	1층	2	1,466,823,780	621,776,220	-	2,088,600,000	50,000,000	158,860,000	208,860,000	208,860,000	208,860,000	208,860,000	208,860,000	208,860,000	208,860,000	208,860,000	626,580,000		
				2층	5	1,498,708,200	635,291,800	-	2,134,000,000	50,000,000	163,400,000	213,400,000	213,400,000	213,400,000	213,400,000	213,400,000	213,400,000	213,400,000	213,400,000	213,400,000	640,200,000	
				3층	4	1,530,592,620	648,807,380	-	2,179,400,000	50,000,000	167,940,000	217,940,000	217,940,000	217,940,000	217,940,000	217,940,000	217,940,000	217,940,000	217,940,000	217,940,000	653,820,000	
059.9866B	59B	5	101동 1호 104동 5호	1층	1	1,419,348,300	601,651,700	-	2,021,000,000	50,000,000	152,100,000	202,100,000	202,100,000	202,100,000	202,100,000	202,100,000	202,100,000	202,100,000	202,100,000	606,300,000		
				2층	1	1,450,179,270	614,720,730	-	2,064,900,000	50,000,000	156,490,000	206,490,000	206,490,000	206,490,000	206,490,000	206,490,000	206,490,000	206,490,000	206,490,000	619,470,000		
				3층	1	1,481,080,470	627,819,530	-	2,108,900,000	50,000,000	160,890,000	210,890,000	210,890,000	210,890,000	210,890,000	210,890,000	210,890,000	210,890,000	210,890,000	632,670,000		
				4층	2	1,511,911,440	640,888,560	-	2,152,800,000	50,000,000	165,280,000	215,280,000	215,280,000	215,280,000	215,280,000	215,280,000	215,280,000	215,280,000	215,280,000	215,280,000	645,840,000	
084.9549A	84A	73	101동 4호 102동 1,3호 105동 1,3,4호 106동 1,2호 107동 1,2,3호 108동 1,2,5호	1층	3	1,774,501,410	752,198,590	-	2,526,700,000	50,000,000	202,670,000	252,670,000	252,670,000	252,670,000	252,670,000	252,670,000	252,670,000	252,670,000	252,670,000	758,010,000		
				2층	12	1,813,057,680	768,542,320	-	2,581,600,000	50,000,000	208,160,000	258,160,000	258,160,000	258,160,000	258,160,000	258,160,000	258,160,000	258,160,000	258,160,000	258,160,000	774,480,000	
				3층	14	1,851,613,950	784,886,050	-	2,636,500,000	50,000,000	213,650,000	263,650,000	263,650,000	263,650,000	263,650,000	263,650,000	263,650,000	263,650,000	263,650,000	263,650,000	790,950,000	
				4층	14	1,890,240,450	801,259,550	-	2,691,500,000	50,000,000	219,150,000	269,150,000	269,150,000	269,150,000	269,150,000	269,150,000	269,150,000	269,150,000	269,150,000	269,150,000	807,450,000	
				5~9층	30	1,928,796,720	817,603,280	-	2,746,400,000	50,000,000	224,640,000	274,640,000	274,640,000	274,640,000	274,640,000	274,640,000	274,640,000	274,640,000	274,640,000	274,640,000	823,920,000	
084.9645B	84B	59	101동 3호 102동 2호 105동 2호 108동 4호	1층	1	1,768,602,090	749,697,910	-	2,518,300,000	50,000,000	201,830,000	251,830,000	251,830,000	251,830,000	251,830,000	251,830,000	251,830,000	251,830,000	251,830,000	251,830,000	755,490,000	
				2층	3	1,807,088,130	766,011,870	-	2,573,100,000	50,000,000	207,310,000	257,310,000	257,310,000	257,310,000	257,310,000	257,310,000	257,310,000	257,310,000	257,310,000	257,310,000	771,930,000	
				3층	4	1,845,503,940	782,296,060	-	2,627,800,000	50,000,000	212,780,000	262,780,000	262,780,000	262,780,000	262,780,000	262,780,000	262,780,000	262,780,000	262,780,000	262,780,000	788,340,000	
				4층	4	1,883,989,980	798,610,020	-	2,682,600,000	50,000,000	218,260,000	268,260,000	268,260,000	268,260,000	268,260,000	268,260,000	268,260,000	268,260,000	268,260,000	268,260,000	268,260,000	804,780,000
				5~9층	20	1,922,405,790	814,894,210	-	2,737,300,000	50,000,000	223,730,000	273,730,000	273,730,000	273,730,000	273,730,000	273,730,000	273,730,000	273,730,000	273,730,000	273,730,000	273,730,000	821,190,000
				10~19층	27	1,941,648,810	823,051,190	-	2,764,700,000	50,000,000	226,470,000	276,470,000	276,470,000	276,470,000	276,470,000	276,470,000	276,470,000	276,470,000	276,470,000	276,470,000	276,470,000	829,410,000
084.9145C	84C	37	106동 3호 107동 4호	2층	1	1,755,188,160	744,011,840	-	2,499,200,000	50,000,000	199,920,000	249,920,000	249,920,000	249,920,000	249,920,000	249,920,000	249,920,000	249,920,000	249,920,000	249,920,000	749,760,000	
				3층	2	1,792,550,520	759,849,480	-	2,552,400,000	50,000,000	205,240,000	255,240,000	255,240,000	255,240,000	255,240,000	255,240,000	255,240,000	255,240,000	255,240,000	255,240,000	765,720,000	
				4층	2	1,829,912,880	775,687,120	-	2,605,600,000	50,000,000	210,560,000	260,560,000	260,560,000	260,560,000	260,560,000	260,560,000	260,560,000	260,560,000	260,560,000	260,560,000	781,680,000	
				5~9층	10	1,867,275,240	791,524,760	-	2,658,800,000	50,000,000	215,880,000	265,880,000	265,880,000	265,880,000	265,880,000	265,880,000	265,880,000	265,880,000	265,880,000	265,880,000	265,880,000	797,640,000
				10~19층	18	1,885,886,190	799,413,810	-	2,685,300,000	50,000,000	218,530,000	268,530,000	268,530,000	268,530,000	268,530,000	268,530,000	268,530,000	268,530,000	268,530,000	268,530,000	268,530,000	805,590,000
				20층 이상	4	1,904,567,370	807,332,630	-	2,711,900,000	50,000,000	221,190,000	271,190,000	271,190,000	271,190,000	271,190,000	271,190,000	271,190,000	271,190,000	271,190,000	271,190,000	271,190,000	271,190,000

084.9898T	84T1	3	110동 1,2,3호	1층	3	1,921,703,490	814,596,510	-	2,736,300,000	50,000,000	223,630,000	273,630,000	273,630,000	273,630,000	273,630,000	273,630,000	273,630,000	820,890,000
	84T2	3	110동 1,2,3호	2층	3	1,963,490,340	832,309,660	-	2,795,800,000	50,000,000	229,580,000	279,580,000	279,580,000	279,580,000	279,580,000	279,580,000	279,580,000	838,740,000
140.8560P	140P	3	106동 1호 107동 1호 108동 1호	18층	1	3,427,013,310	1,320,624,270	132,062,420	4,879,700,000	50,000,000	437,970,000	487,970,000	487,970,000	487,970,000	487,970,000	487,970,000	487,970,000	1,463,910,000
				20층 이상	2	3,460,934,400	1,333,696,000	133,369,600	4,928,000,000	50,000,000	442,800,000	492,800,000	492,800,000	492,800,000	492,800,000	492,800,000	492,800,000	492,800,000

■ 공통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 인지세,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통합)가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추후 취득세 산정 시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 선택품목 비용이 합산되어 산정됨)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의 계약은 분양계약 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세대별 주택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공급금액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이에 대해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음)
- 공급금액은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입주증 발급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요일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총 10% 완납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이자 후불제이며, 전체 분양대금 중 40% 범위 내에서 중도금 용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1~4회차 중도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5~6회차 중도금(분양대금의 20%)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전체 분양대금 중 40% 범위 내에서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사업주체(조합)이 대납하고 입주시 계약자가 사업주체(조합) 대납이자를 조합에 상환하는 이자후불제 방식입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익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 및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의하여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주체가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수관리금 금원은 관리주체에서 정하고, 이에 따른 징수 및 사용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재개발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동일 주택형에 아파트라도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에 대해 무상제공품목 및 마감재 등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별 라인별 최고층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동·호수 배치도를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산 검색 결과 당첨 사실, 이중 당첨 및 주택 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원본서류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본 제출 불가)**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은 분양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4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p>‘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p> <p>→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div> <p>→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p>	<p>-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p> <p>-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p> <p>-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p> <p>-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p>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공급기준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 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50%;">구분</th> <th style="width:50%;">처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center;">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 <td style="text-align:center;">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 </tr> <tr> <td style="text-align:center;">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 <td style="text-align:center;">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 </tr> <tr> <td style="text-align:center;">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 <td style="text-align:center;">모두 부적격 처리</td> </tr> <tr> <td style="text-align:center;">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 <td style="text-align:center;">모두 부적격 처리</td> </tr> </tbody> </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p>■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공급 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p>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p>■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p>												
<p>■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공급 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p>												
무주택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유의사항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청약이 불가하며,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 전 외국인 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택소유여부 확인 불가로 부적격될 수 있음)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8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관련법규</th> <th>해당기관</th> </tr> </thead> <tbody> <tr> <td>국가유공자 등</td> <td>「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국가유공자 /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 등</td> <td rowspan="2">국가보훈부 서울남부보훈지청 복지과</td> </tr> <tr> <td>장기복무 재대군인</td> <td>「재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재대군인</td> </tr> <tr> <td>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td> <td>「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td> <td>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td> </tr> <tr> <td>중소기업 근로자</td> <td>「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td> <td>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td> </tr> <tr> <td>장애인</td> <td>「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td> <td>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td> </tr> </tbody> </table>	구 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국가유공자 /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 등	국가보훈부 서울남부보훈지청 복지과	장기복무 재대군인	「재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재대군인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구 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국가유공자 /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 등	국가보훈부 서울남부보훈지청 복지과																
장기복무 재대군인	「재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재대군인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내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다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태아, 입양자녀 포함)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① 지역 : 해당시·도 거주자(서울특별시 거주자) 50%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 제5조에 의거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우선공급 낙첨자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함(단, 해당시·도에서 경쟁 발생 시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함)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가 기타지역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② 배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접수 시 배점표에 자필 작성 및 점수 기재) <table border="1" data-bbox="331 657 2056 1503"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평점요소</th> <th rowspan="2">총배점</th> <th colspan="2">배점기준</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기준</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100</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3">미성년 자녀수(1)</td> <td rowspan="3">40</td> <td>4명 이상</td> <td>40</td> <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 </tr> <tr> <td>3명</td> <td>35</td> </tr> <tr> <td>2명</td> <td>25</td> </tr> <tr> <td rowspan="3">영유아 자녀수(2)</td> <td rowspan="3">15</td> <td>3명 이상</td> <td>15</td> <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 </tr> <tr> <td>2명</td> <td>10</td> </tr> <tr> <td>1명</td> <td>5</td> </tr> <tr> <td rowspan="2">세대구성(3)</td> <td rowspan="2">5</td> <td>3세대 이상</td> <td>5</td> <td rowspan="2">-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td> </tr> <tr> <td>한부모 가족</td> <td>5</td> </tr> <tr> <td rowspan="3">무주택기간(4)</td> <td rowspan="3">20</td> <td>10년 이상</td> <td>20</td> <td rowspan="3">-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td> </tr> <tr> <td>5년 이상 ~ 10년 미만</td> <td>15</td> </tr> <tr> <td>1년 이상 ~ 5년 미만</td> <td>10</td> </tr> <tr> <td rowspan="3">해당 시·도 거주기간(5)</td> <td rowspan="3">15</td> <td>10년 이상</td> <td>15</td> <td rowspan="3">-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td> </tr> <tr> <td>5년 이상 ~ 10년 미만</td> <td>10</td> </tr> <tr> <td>1년 이상 ~ 5년 미만</td> <td>5</td> </tr> <tr> <td>입주자저축가입기간(6)</td> <td>5</td> <td>10년 이상</td> <td>5</td> <td>-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td> </tr> </tbody> </table>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유의사항
	<p>※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p> <p>(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p> <p>(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p> <p>※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p>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 입양자녀도 포함 합니다.[임신인 경우 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양자녀는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 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입주 전 불법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양자격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63호(2024.03.25.)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3% 범위 : 67세대
------------	---------------------------------------	-----------------------------------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p>■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태아, 입양자녀 포함) → ⑤추첨</p> <p>①소득구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단계</th> <th style="width: 15%;">소득구분</th> <th style="width: 75%;">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생아 우선공급 (2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생아 일반공급 (10%)</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body> </table>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비고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분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분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5.13.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533,764원~ 10,547,268원	8,802,203원~ 12,323,083원	9,326,986원~ 13,057,779원	9,906,264원~ 13,868,768원	10,485,542원~ 14,679,757원	11,064,820원~ 15,490,74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9,040,517원~ 12,054,021원	10,562,643원~ 14,083,523원	11,192,383원~ 14,923,176원	11,887,517원~ 15,850,021원	12,582,650원~ 16,776,866원	13,277,784원~ 17,703,710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547,269원~	12,323,084원~	13,057,780원~	13,868,769원~	14,679,758원~	15,490,74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5px;">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p>※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 기준(3억 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주첨제 자격으로 청약신청 가능함.</p> <p>■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p>	
<p>군복무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p>	<p>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p>
<p>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p>	<p>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p>
<p>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p>	<p>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p>
<p>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p>	<p>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p>
<p>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p>	<p>전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p>
<p>■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따릅니다.</p>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8세대
------------	--	---------------------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 거주한 경우 • 2025.06.10.「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만 해당한다)을 확인할 서류를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3년간 내역을 제출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세대주일것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배우자 분리세대의 세대원을 직계존속으로 부양가족수에 포함할 경우, 배우자는 해당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세대주일것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①소득구분 <table border="1" data-bbox="315 962 2098 1347"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단계</th> <th style="width: 20%;">소득구분</th> <th style="width: 70%;">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신생아 우선공급 (1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2단계</td> <td>신생아 일반공급 (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3단계</td> <td>우선공급 (3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4단계</td> <td>일반공급 (1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 rowspan="2">5단계</td> <td rowspan="2">추첨공급</td> <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r> <td>1인 가구</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p>※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p> <p>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p>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5.13.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12,054,021원	11,442,864원~ 14,083,523원	12,125,082원~ 14,923,176원	12,878,143원~ 15,850,021원	13,631,204원~ 16,776,866원	14,384,266원~ 17,703,710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1인 가구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의원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 기준(3억 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청약신청 가능함.

비고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p>-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p>-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p> <p>* 「농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p> <p>* 「초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p> <p>*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p> <p>*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p> <p>-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p>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군복무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p> <p>■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가(2024.05.13.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p> <p>■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1순위 신청가능 - 세대주일 것(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규제지역 1순위 청약 불가)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p> <p>■ 본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2순위로 청약신청 가능하며,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추첨제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p>																				
청약통장 자격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입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p>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331 842 2101 1034"> <thead> <tr> <th>구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 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당첨자 선정방법	<p>■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p> <p>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p> <table border="1" data-bbox="315 1347 2114 1490"> <thead> <tr> <th>구분</th> <th>가점제</th> <th>추첨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60㎡ 이하</td> <td>40%</td> <td>60%</td> </tr> <tr> <td>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td> <td>70%</td> <td>30%</td> </tr> <tr> <td>전용면적 85㎡ 초과</td> <td>80%</td> <td>20%</td> </tr> </tbody> </table>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70%	30%	전용면적 85㎡ 초과	80%	20%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70%	30%																			
전용면적 85㎡ 초과	80%	2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2025.06.10.「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만 해당한다)을 확인할 서류를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직계존속은 과거 3년간, 직계비속은 과거 1년간 내역으로 제출해야 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분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유의사항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6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청약이 불가함)
 - 배우자 분리세대의 세대원을 직계존속으로 분양가족수에 포함할 경우, 배우자는 해당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가점제 입주자 선정시 유의사항**
 - 접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속"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 방식**
 - 주택형별로 층별, 동별, 호별, 향별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 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
 -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외)
 -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입주자저축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된 분은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의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6.05.26.(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아크로 리버스카이 주택전시관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아크로 리버스카이 주택전시관(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함)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741(도곡동 180-3번지)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6.05.27.(수) 09: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기타지역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2026.05.28.(목) 09:00~17:30	
		2순위		2026.05.29.(금) 09:00~17:30	

-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주택전시관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6.05.(금) ~ 2026.06.14.(일) /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일시 : 2026.06.05.(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팸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팸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계약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6.06.05.(금)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6.06.20.(토) ~ 2026.06.24.(수) 5일간 (10:00~17:00) 장소 : 아크로 리버스카이 주택전시관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741(도곡동 180-3번지)]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배정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예비입주자) 선정 및 유의사항

구 분	선정 방법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 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 선정합니다.(단, 특별공급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600% 미만인 경우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특별공급 신청자 전원 예비입주자로 선정 되며,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특별공급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번 부여합니다.(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서류제출기간(별도 통지)에 부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적격으로 판정 시 예비입주자 동호수 배정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 세대 발생 및 소명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예비입주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규제지역내 1순위 청약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구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 장소
당첨자 서류제출(특별공급 / 일반공급)	2026.06.09.(화) ~ 2026.06.12.(금) (4일간), 10:0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크로 리버스카이 주택전시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741(도곡동 180-3번지)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분리된 배우자 서류는 반드시 지참
예비입주자 서류제출(특별공급 / 일반공급)	추후 별도 안내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 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5.13.)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공통 유의사항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해야하며, 상기 서류제출 일정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단, 정당 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전 사전 서류제출기간 내에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5.13.)**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인감증명서 등 본인/대리 발급이 구분되는 서류의 경우 본인 발급용이 아닌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당첨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세대주변경,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자격검증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제반서류 상 등재된 모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은 반드시 표기되어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는 지정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기간 내(계약 체결 이전)제출하여야합니다.(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 불가함.)
- 소명자료제출과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으로 청약신청자가 청약 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소명기간 내 (계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 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검증 제출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무주택서약서	본인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신분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발급 구분 : 본인발급, 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용 / 제출처 : DL이앤씨(주)]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대조하여 일치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본인과의 관계확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등 혼인 관계 확인(본인 및 배우자 포함 성명, 주민등록번호(뒷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초과한 기간 또는 183일 초과한 해외체류 여부 확인 •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해외 체류 중일 경우 국내 거주자로 인정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 전체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본인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 시 생략(※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우 제외)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군복무기간 10년이상 명시)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분리세대)에 한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 배우자가 재외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제출(주택소유여부 확인) ※ 특별공급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청약이 불가하며,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 전 외국인 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택소유여부 확인 불가로 부적격될 수 있음)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관련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계속하여 90일 또는 연간 183일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 중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서류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①, ② 모두 반드시 제출)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인정 안됨 ※ 해외에서 발급 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필수 ※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한 세대원 및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및 세대원	• 세대원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를 확인 ※ 기록대조일을 제출대상자의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 전체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 할 수 있음)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확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배점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세대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신청자의 친자녀가 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에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미등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18세 직계비속을 미혼 자녀인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및 출산 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진단서, 유산관련 진단서) 제출(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 가능해야 함) 출산 이행 확인각서(양식)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표기)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자격요건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 등)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1년이상 동일 등본 등재시) ※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와 혼인 전 출생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생아 우선공급/일반공급으로 신청한 해당 자녀(2세 미만, 2세가 되는 날을 포함) ※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18세 미혼의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녀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및 출산 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진단서, 유산관련 진단서) 제출(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 가능해야 함) 출산 이행 확인각서(양식)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표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포함)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 조회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일 현재, 직장+지역 포함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포함) ※ 아래표-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비사업자확인 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로 청약자와 세대구성원 전원 서류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소유현황에 보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 '전국통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추가 제출 ※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원은 전원 인증서(공동/금융) 준비 필수
		○	자산입증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 (아래표-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자산증빙서류는 세대원 전원(영유아, 미성년자, 군인, 노인, 장애인 등)이 예외 없이 제출하여야 함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요건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 등)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청약신청자의 동일 등본상 등재된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혼과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1년이상 동일 등본 등재시) ※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아 우선공급/일반공급으로 신청한 해당 자녀(2세 미만, 2세가 되는 날을 포함) ※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청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및 출산 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진단서, 유산관련 진단서) 제출(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 가능해야 함) • 출산 이행 확인각서(양식)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표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포함)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 조회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일 현재, 직장+지역 포함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포함) ※ 아래표-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비사업자확인 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본인 및 세대원

	○	자산입증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 (아래표-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자산증빙서류는 세대원 전원(영유아, 미성년자, 군인, 노인, 장애인 등)이 예외 없이 제출하여야 함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 ※ 아래표-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참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시만 인정)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 사항(3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 제출 ※ 발급기간 : 2023.05.13.~ 2026.05.13.(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해야 함.(※ 인터넷 발급 불가)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기간, 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등 포함해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및 출산 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진단서, 유산관련 진단서) 제출(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 가능해야 함) · 출산 이행 확인각서(양식)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표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자녀로 인정 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 제출 ※ 발급기간 : 2025.05.13.~ 2026.05.13.(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해야 함.(※ 인터넷 발급 불가)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기간, 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등 포함해서 발급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일반공급 (가점제당첨자, 가점제 예비입주자)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 있을 경우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시만 인정)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 사항(3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 제출 ※ 발급기간 : 2023.05.13.~ 2026.05.13.(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해야 함.(※ 인터넷 발급 불가)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기간, 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등 포함해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 전체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 제출 ※ 발급기간 : 2025.05.13.~ 2026.05.13.(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해야 함.(※ 인터넷 발급 불가)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기간, 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등 포함해서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본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항에 따른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문구 포함분에 한하여 인정), 공동주택자격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사업주체가 증빙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신청 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위임장	본인	• 당첨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당사 주택전서관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아파트 당첨자 서류제출 위임용(본인발급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 위임용 / 제출처 : DL이앤씨(주)]
	○	신분증 및 도장 (※ 모바일 신분증 불가)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음.

■ [표1]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이 있는 년도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 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해당 직장 연봉/근로계약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연말정산 이후인 경우)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② 해당직장
	직장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	① 소득금액증명 또는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②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는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①, ②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명	①, ② 세무서
	신규사업자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이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명 ③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 국민연금 미가입자 : 공고일 이전 최근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 (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①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②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재무제표 및 원천징수이행명세서 ※ 계속적인 법인대표자의 경우 ①과 ②를 모두 제출하여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근로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③ 사업자등록증명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재직증명서	①, ②, ⑤ 해당직장 ③ 세무서 ④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② 위촉(해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간 추정을 위하여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를 필수로 제출.	①, ② 해당직장/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일용직 근로자	①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② 위촉(해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및 위촉(해촉)증명서를 필수로 제출.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해당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2025.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② 전전년도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을 입증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 주택전시관에 비치 ② 세무서

※ 상기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5.13.)** 이후 발행분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증빙서류는 원본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으며, 세무서 또는 해당직장에서 발급받아 '주민등록번호 전체 및 성명'이 정확히 표시되어야 인정됩니다.

■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서류구분	해당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입증 기본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및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과거1년(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자	①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①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납부사실증명),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결정세액 환급 및 "0"원 일 경우) ※ 상기 4가지 서류를 모두 갖추어야 소득세 납부 입증이 가능함. ※ 소득금액증명원의 결정세액과 납부내역증명(납부사실증명)을 비교하여 소득세 완납 확인 ③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닌 경우(학원강사, 보험모집원 프리랜서 등)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 일용직 근로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일용근로내역 표기)	• 해당직장 및 세무서
	해당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① 근로자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납부내역증명(납부사실증명),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상기 2가지 서류를 모두 갖추어야 소득세 납부 입증이 가능함. ※ 상기서류로 결정세액 납부 및 환급 내역 확인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전일 경우 : * 일반,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확정(예정) 신고서 (단, 금액이 - 또는 0일 경우 소득세 납부이력으로 불인정) * 면세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서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③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닌 경우(학원강사, 보험모집원 프리랜서 등)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지급조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④ 일용직 근로자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해당직장 및 세무서

※ 상기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는 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통산 5년의 납부실적)이며,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 상기 모든 입증서류는 성명, 주민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이라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했던 분은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소득증빙서류는 세무서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재직직장)에게서 발급받은 원본만 제출 가능합니다.

※ 소득증빙서류는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으며, 세무서 또는 해당직장에서 발급받아 '주민등록번호 전체 및 성명'이 정확히 표시되어야 인정됩니다.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주택·건물·토지 대상) ④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상상 주택인 경우]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일사편리(kras.go.kr)"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 제출하시면 소유권 등기사항 및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확인가능 ⑤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 개별공시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 공시지가 사용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일사편리(kras.go.kr)"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 제출하시면 소유권 등기사항 및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확인가능 ⑥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상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축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이택스, 위택스에서 조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건물시가 확인을 위하여 "재산세 과세내역"을 발급받아 건물시가를 확인가능	①, 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③ 위택스(www.wetax.go.kr) ④, ⑤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kras.go.kr) ⑥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추가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발급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미과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주택·건물·토지 대상) ※ 발급방법: 위택스 >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 미과세증명서(전국단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위택스(www.wetax.go.kr) / 행정복지센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 입증서류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천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3.31억원) 산정 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또한 대상이 됩니다.

※ 보유중인 부동산이 없는 경우 : 세대원(미성년자 포함) 전원 제출

1.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신청 결과 화면 캡처본 출력 후 제출 (단, 공동인증서 지참 후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해당 화면을 구현하여야 인정됨.)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 재산세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증빙, 전국단위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해당 시청, 구청, 군청,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계약금)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문의 전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2026.06.20.(토) ~ 2026.06.24.(수) 10:00 ~ 17:00 (5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크로 리버스카이 주택전시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741(도곡동 180-3번지) ※ 공급계약 체결 방법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공지사항은 추후 '아크로 리버스카이' 사이버 주택전시관(https://www.acro.co.kr)을 통해 별도 안내 예정 	☎02-529-0205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유의사항

-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주택전시관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 제한사항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 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에 체결하도록 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등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공급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계약금(1차, 2차), 중도금, 잔금	농협은행	301-0385-2171-01	디엘이앤씨(주),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상기 아파트 공급대금 납부계좌는 추가선택품목(I) 발코니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II), (III)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301호 계약자 → '1010301홍길동'

※ 계약금 납부는 무통장 입금 및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주택전시관에서 일체의 현금·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주택전시관 수납 불가 및 신용카드 결제 불가)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정당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반드시 지정된 계좌로 지정일자에 입금하여야 하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라 처리됩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		신분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아파트계약용(본인 발급용)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용 / 제출처 : DL이앤씨(주)]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대조하여 일치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본인	• 「인지세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발급 후 사본 제출 - 아파트 공급계약서 수입인지 세액 : 10억원 초과 35만원 * 계약자 부담액 : 10억원 초과 17만 5천원(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1/2씩 균등 부담) - 추가선택품목계약서 수입인지 세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 계약자 부담액 : 3천만원 이하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각각 100%씩 납부) - 수입인지 구입처 1.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2.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본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본인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증빙자료 제출)	
대리인 계약 시 (본인 이외)	○		위임장	본인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 위임용 / 제출처 : DL이앤씨(주)]
	○		신분증, 인장 (※ 모바일 신분증 불가)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계약자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의거 분양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연대하여 균등(각각 50%)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총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사업주체(시공사)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발코니확장 + 추가선택품목Ⅱ, Ⅲ)**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의거 분양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또는 시공사)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각각 100%씩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총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사업주체(시공사) 부담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계약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우체국, 은행)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co.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1577-55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당첨자 계약체결기간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제출한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 체결 시 필요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부적격세대 및 미계약세대 발생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의거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주택소유현황, 청약제한 사항 등을 전산검색하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등으로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를 미제출 또는 제출 하였으나 확인 필요사항 누락, 생략 등 자격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부적격 통보 및 소명 안내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의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또는 청약제한사항 등이 있는 경우(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음) 및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확인결과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는 유선 또는 대면, 서면의 방법으로 입주대상자에게 부적격 통보하며, 그 통보일로부터 7일의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계약체결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거 부적격당첨자의 청약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주택전시관에 방문하여 '부적격당첨자 계좌부활(당첨사실 삭제) 요청서(주택전시관 비치)' 작성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기준) 동안 다른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사전당첨자를 포함)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 의거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의 신청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따른 입주자 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제1순위로 공급 신청할 수 없는 자가 제1순위로 공급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2의2. 제28조 제6항에 따라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 받아 당첨된 경우 3.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한 번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특례 제외) 4. 제54조제1항 각 호의 주택에 당첨된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5. 제58조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가 당첨일부터 최대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p>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당첨자, 본인 중복신청/당첨자, 부적격 재당첨자 처리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간 특별공급에 대한 중복청약이 가능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청약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등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또는 분양일정상 계약한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당첨취소 세대는 당첨유형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관계기관의 전산검색결과 수신현황 및 입주대상자의 자격확인절차 등 분양일정상 계약완료 이후 일정시점(중도금 1회차 납부 전)까지는 사업주체의 입주 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자체점검, 재검수 등으로 인하여 부적격사항 확인 시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현장점검으로 불법전매, 부정청약,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적발시 계약완료 상당시간 이후(입주 전까지)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 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 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장소에 방문하여 '부적격당첨자 계좌부활(당첨사실 삭제) 요청서'(계약장소에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 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함 •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장소에 방문하여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주체에 제출하고 '부적격당첨자 계좌부활(당첨사실 삭제) 요청서'(주택전시관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 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함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p>기타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통장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자(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원, 거주지역, 거주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부적격 당첨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하여 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발코니확장 + 추가선택품목Ⅱ, Ⅲ)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전매 포함)에 따른 계약체결 등으로 발생하는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납부하여야 하고,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발코니확장 + 추가선택품목Ⅱ, Ⅲ)계약서는 각각 100%씩 납부해야하며,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과열지역인 서울특별시 동작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증빙자료 포함)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부터 제3항 및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도 남은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5항에 따라 공급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사용검사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 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에 관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와 금융기관 간의 중도금 대출을 알선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아래 사항들은 중도금 대출의 알선이 가능한 경우에 관한 안내사항이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 대출금액·대출조건 및 대출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보장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 주택전시관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 상담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출 여부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없으며, 이를 내용으로 하는 어떠한 보장 또는 보증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대출 여부는 계약자의 대출 적격사유 등을 고려하여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자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등의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대출 알선이 제공되지 않거나, 알선이 제공될 경우라도 계약자의 대출비용이 축소되거나 대출 부적격 등으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경우는 본 아파트 공급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계약금(분양대금의 10%)완납 및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과 별도로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 신청 시 본인외에는 중도금 대출 신청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이자후불제이며, 전체 분양대금 중 40% 범위 내에서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 본인 납부조건으로 용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1~4회차 중도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5~6회차 중도금(분양대금의 20%)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전체 분양대금 중 40% 범위 내에서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사업주체(조합)이 대납하고 입주시 계약자가 사업주체(조합) 대납이자를 조합에 상환하는 이자후불제 방식입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여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시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분양대금의 중도금 40% 범위 내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 이자는 분양계약의 정상적 이행조건하에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월상환 대출이자를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조합)가 대납하되,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기간 내 실입주일 또는 입주기간의 만료일 중 빠른 날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 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 본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동작구는 투기과열지구로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하며,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용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법인은 중도금대출이 불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개인의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불가 시 중도금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분양대금 미납부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들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 주택전시관은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분: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 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건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조항</th> <th>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th> <th>주거전용면적</th> <th>수도권</th> <th>비수도권</th> </tr> </thead> <tbody> <tr> <td>제53조 제9호가목</td> <td>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td> <td>60㎡ 이하</td> <td>1억 6천만원</td> <td>1억원</td> </tr> <tr> <td rowspan="3">제53조 제9호나목</td> <td>단독주택</td> <td rowspan="3">85㎡ 이하</td> <td rowspan="3">5억원</td> <td rowspan="3">3억원</td> </tr> <tr> <td>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td> </tr> <tr> <td>도시형 생활주택</td> </tr> </tbody> </table>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 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 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 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 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p>제외함</p> <p>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p> <p>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p> <p>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p> <p>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 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p> <p>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p> <p>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p>
--	---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및 3,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당사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 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2일 이상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전방문계획을 제출한 후에 공사 여건상 자재, 장비 또는 인력 등의 수급이 곤란한 하거나 그 밖에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전일까지 중대한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완료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 방문기간 시작일을 15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고,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전에 입주예정일을 주택공급의 계약자에게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500세대 초과 단지의 경우 60일 이상으로 하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9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의 변경, 조기준공,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굴, 정부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의 사유에 따라 앞당겨지거나 지연되는 등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분양계약서 등에 따라 입주예정일이 통보된 경우 입주예정일의 변경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될 수 없으며,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 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스카이라운지, 피트니스, 필라테스룸, 스크린골프라운지, 스포츠코트, 런드리라운지, 사우나(남/여), 라운지카페, 프라이빗다이닝룸, 프라이빗시네마, 스테디룸, 에듀라운지(작은도서관), 스테디라운지(남/여), 프라이빗스테디룸(남/여), 게스트하우스, 어린이집, 키즈라운지(다함께돌봄센터), 시니어라운지, 생활지원센터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구분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 2층 주차장	2.7m	2.7m
지하 3층 주차장	3.2m(일부2.7m)	3.2m
지하 1,4층 주차장	2.3m	2.3m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합니다

구분	내진능력(MMI 등급)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2017)	VII 등급(7등급)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VAT 포함]

구분	건축	전기	소방/정보통신
상호	(주)히림종합건축사사무소	(주)아키텐엔지니어링	(주)지여이앤씨
금액	6,311,580,000	1,140,206,100	740,3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호명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등용로 122(대방동, 의당빌딩3층)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65, 에이동(마곡동, 원그로브)
법인등록번호	110171-0067832	110111-7736808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12026-101-0002500 호	₩ 452,116,00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p>【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칩</p> <p>【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p>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오피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비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div style="text-align: center;"> <h3>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h3> <p>1. 공동주택명 : 노원신8재개발비록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신축지 : 노원신8 재개발비록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3.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23-61번지 일대 4. 성능등급</p> <p>가. 소를 관한 등급</p> <table border="1"> <tr><th>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광합성률 차단율</td><td>★★★★</td></tr> <tr><td>2. 추위방지율 차단율</td><td>★★★★</td></tr> <tr><td>3. 세대 간 벽체의 차음성능</td><td>★★</td></tr> <tr><td>4. 고품질도료, 필드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td><td>★★</td></tr> <tr><td>5. 화장실 급배수 소음</td><td>★★★★</td></tr> </table> <p>나. 구조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th>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내구성</td><td>★</td></tr> <tr><td>2. 가벽성</td><td>★</td></tr> <tr><td>3. 수리용이성 전문부분</td><td>★</td></tr> <tr><td>4. 수리용이성 일반부분</td><td>★</td></tr> </table> <p>다. 환경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th>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td><td>★★★★</td></tr> <tr><td>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td><td>★★</td></tr> <tr><td>3. 폐기물, 폐기물·정유물(폐유·폐수) 배출을 준 법·기준</td><td>★★★★</td></tr> <tr><td>4. 일조량 2중검정 대체의 적당성</td><td>★★</td></tr> <tr><td>5. 에너지 성능</td><td>★★★★</td></tr> <tr><td>6. 에너지 준나태 및 골리지양 방지</td><td>★★</td></tr> <tr><td>7. 간·폐쇄성으로 인한</td><td>★★</td></tr> <tr><td>8. 차폐성 에너지저기 기술의 적용</td><td>★★</td></tr> <tr><td>9. 조수층 보육을 위한 특장물질의 사용 금지</td><td>★</td></tr> <tr><td>10. 환경친화적 벽돌(PCB) 사용</td><td>★★</td></tr> <tr><td>11. 리프트 차폐막 사용</td><td>★★★★</td></tr> <tr><td>12. 차음성 차폐막 사용</td><td>★★★★</td></tr> <tr><td>13. 방화용질 차광 차폐막 사용</td><td>★★★★</td></tr> <tr><td>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td><td>★★★★</td></tr> <tr><td>15. 재활용가능자재의 보관시설 설치</td><td>★★★★</td></tr> <tr><td>16. 자원관리</td><td>★★★★</td></tr> <tr><td>17. 재활 및 폐기물처리율</td><td>★★</td></tr> <tr><td>18. 재활용 기기 사용</td><td>★★★★</td></tr> <tr><td>19. 물 사용량 모니터링</td><td>★★</td></tr> </table> <p>2025년 11월 7일</p> <p style="text-align: center;">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small>Korea Research Institute of Eco-Environmental Architecture</small> </p> </div>	항목	성능등급	1. 광합성률 차단율	★★★★	2. 추위방지율 차단율	★★★★	3. 세대 간 벽체의 차음성능	★★	4. 고품질도료, 필드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벽성	★	3. 수리용이성 전문부분	★	4. 수리용이성 일반부분	★	항목	성능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3. 폐기물, 폐기물·정유물(폐유·폐수) 배출을 준 법·기준	★★★★	4. 일조량 2중검정 대체의 적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준나태 및 골리지양 방지	★★	7. 간·폐쇄성으로 인한	★★	8. 차폐성 에너지저기 기술의 적용	★★	9. 조수층 보육을 위한 특장물질의 사용 금지	★	10. 환경친화적 벽돌(PCB) 사용	★★	11. 리프트 차폐막 사용	★★★★	12. 차음성 차폐막 사용	★★★★	13. 방화용질 차광 차폐막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재의 보관시설 설치	★★★★	16. 자원관리	★★★★	17. 재활 및 폐기물처리율	★★	18. 재활용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div style="text-align: center;"> <h3>녹색건축 예비 인증서</h3> <p>■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 3. 24.></p> <p>건축물명 : 노원신8재개발비록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축주 : 노원신8 재개발비록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준공(예정)일 : 2025년 11월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23-61번지 일대 층 수 : 지하 4층, 지상 29층 면적 : 169,583.77㎡(경지면적:166,982.62㎡)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기타시설 설계자 : 태허건축환경건축사사무소</p> <p>인증번호 : 45-54E[D-P]-2025-1056-9 인증기간 : 2025. 11. 07. ~ 유효기간 : 서울특별시서울광역시와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 날까지</p> <p>인증등급 : 우수(2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공동주택) 제2조항, 고시 제2016-341호, 환경부 고시 제2016-110호.</p> <p>이 건축물은 녹색건축(우수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녹색건축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p>종합등급 ★ ★ ★ ☆</p> </div> <p>2025년 11월 7일</p> <p style="text-align: center;">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small>Korea Research Institute of Eco-Environmental Architecture</small> </p> <p>※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h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h3> <p>■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1차에너지인증에 관한 규정(별지 제 4호 서식)-개정 2017.1.20.</p> <p>건축물명 : 노원신8재개발비록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축주명 : 노원신8 재개발비록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23-61번지 일대 층 수 : 지하 4층, 지상 29층(1차에너지용량)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태허건축환경건축사사무소</p> <p>인증번호 : 25-5-10-11-0000 평가자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인증기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1년 유효기간 :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외도</p> <p>인증등급 : 1등급</p> <p>이 건축물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1차에너지인증에 관한 규정(별지 제 4호 서식)-개정 2017.1.20.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2025년 10월 22일</p> <p style="text-align: center;">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small>Korea Research Institute of Eco-Environmental Architecture</small> </p> </div>
항목	성능등급																																																															
1. 광합성률 차단율	★★★★																																																															
2. 추위방지율 차단율	★★★★																																																															
3. 세대 간 벽체의 차음성능	★★																																																															
4. 고품질도료, 필드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벽성	★																																																															
3. 수리용이성 전문부분	★																																																															
4. 수리용이성 일반부분	★																																																															
항목	성능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3. 폐기물, 폐기물·정유물(폐유·폐수) 배출을 준 법·기준	★★★★																																																															
4. 일조량 2중검정 대체의 적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준나태 및 골리지양 방지	★★																																																															
7. 간·폐쇄성으로 인한	★★																																																															
8. 차폐성 에너지저기 기술의 적용	★★																																																															
9. 조수층 보육을 위한 특장물질의 사용 금지	★																																																															
10. 환경친화적 벽돌(PCB) 사용	★★																																																															
11. 리프트 차폐막 사용	★★★★																																																															
12. 차음성 차폐막 사용	★★★★																																																															
13. 방화용질 차광 차폐막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재의 보관시설 설치	★★★★																																																															
16. 자원관리	★★★★																																																															
17. 재활 및 폐기물처리율	★★																																																															
18. 재활용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 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 시공,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제1호)	단열 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 방지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미적용	가정용보일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 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하여야 하며, 절수기기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제3호)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 자동 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 여부에 따라 자동점멸스위치를 설치

10 추가선택품목(I) 및 추가선택품목(II), 추가선택품목(III) 계약 ※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선택 시만 가능한 품목입니다.

■ 추가선택품목(I) 발코니확장 공사비

※ 추가선택품목(I) 발코니확장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2026.06.20.(토)~2026.06.24.(수)] 동시에 계약 진행해야 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30%)	잔금(60%)	비고
		계약시	2026.10.20.	입주지정일	
44A, 44B	7,000,000	700,000	2,100,000	4,200,000	-
51A	9,000,000	900,000	2,700,000	5,400,000	-
51B, 51C	12,500,000	1,250,000	3,750,000	7,500,000	-
59A	17,500,000	1,750,000	5,250,000	10,500,000	-
59B	16,800,000	1,680,000	5,040,000	10,080,000	-
84A	19,600,000	1,960,000	5,880,000	11,760,000	-
84B	19,800,000	1,980,000	5,940,000	11,880,000	-
84C	19,400,000	1,940,000	5,820,000	11,640,000	-
84T1, 84T2	19,500,000	1,950,000	5,850,000	11,700,000	-
140P	29,000,000	2,900,000	8,700,000	17,400,000	-

■ 추가선택품목(I)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우리은행	1005-104-898669	디엘이앤씨(주)
계약체결 일정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시		

※ 상기 추가선택품목(I)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는 아파트 공급대금 및 추가선택품목(II), (III)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301호 계약자 → '1010301홍길동'

※ 계약금 납부는 무통장 입금 및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주택전시관에서 일체의 현금·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주택전시관 수납 불가 및 신용카드 결제 불가)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라 처리됩니다.

■ 추가선택품목(I) 발코니확장 계약 유의사항

-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을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은 공동주택 분양 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은 발코니(보조주방)과 실외기실(하향식 피난구)을 제외한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시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자재조달 및 세대공사 등 공사여건 상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자재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주택전시관 등에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발코니 확장 미선택시 각 실과 발코니가 만나는 면에 창호가 설치되며 발코니 외부 쪽으로 창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로 인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높이가 축소 시공되며 발코니의 바닥레벨이 거실 및 침실보다 높게 시공되어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풍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수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발코니 확장 세대는 미확장 발코니(다용도실)에 선풍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됨)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계약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로 시공한 입주자는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결로 등으로 타 입주자의 민원 발생 시 책임은 해당 입주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 책임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입주 후 발코니 확장을 개별로 시공한 입주자는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등기구 및 배선기구의 사양은 확장형에 비해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세탁기 설치 공간 및 수전 등이 설치되는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추가선택품목 선택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각 주택형별·타입별 발코니 면적 및 창호 규격이 상이하여 확장금액이 다르게 산정되었으니, 주택전시관 등에서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현저히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재 및 가구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발코니(보조주방), 실외기실(하향식 피난구) 등은 제외)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인접 세대 및 동일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벽체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는 실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비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일부 설치되며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가구(일반, 주방) 배면에는 시공 선후 관계상 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목창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제조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 외부 파손 및 훼손 사항은 시공자에게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골조와 이질 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 부분의 디테일이 시공상의 이유로 주택전시관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형(기본형) 단위세대는 발코니 샷시 대신 분합문이 설치되고, 발코니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어, 외부입면이 확장형 단위세대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은 현재 LX하우스 창호로 구현되었으나, 외부창호 제조사 선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제조사에 따라 열관류율 및 TDR값은 법규를 만족하는 범위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II)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 추가선택품목(II)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2026.06.20.(토)~2026.06.24.(수)]과 동시에 계약을 진행해야 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약식표기(타입)	제조사	구성	판매가격	비고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택1)	36A, 36B	LG/삼성	일반형:침실/거실/실내기 1대	2,440,000	※ 홈네트워크 연결기능 포함 와이파이 기능 장착 *제품모델은 실별로 상이하고 표기량이 많아 판매시 별도안내
		LG	프리미엄형:침실/거실/실내기 1대	2,640,000	
	44A, 44B	LG/삼성	일반형:거실+침실/실내기2대	3,400,000	
		LG	프리미엄형:거실+침실/실내기2대	3,800,000	
	51A, 51B, 51C	LG/삼성	일반형:거실+침실1/실내기2대	3,480,000	
		LG/삼성	일반형:거실+침실1+침실2/실내기3대	5,220,000	
		LG	프리미엄형:거실+침실1/실내기2대	3,880,000	
		LG	프리미엄형:거실+침실1+침실2/실내기3대	5,820,000	
	59A, 59B	LG/삼성	일반형:거실+침실1/실내기2대	3,700,000	
		LG/삼성	일반형:거실+침실1+침실2+침실3/실내기4대	6,500,000	
		LG	프리미엄형:거실+침실1/실내기2대	4,100,000	
		LG	프리미엄형:거실+침실1+침실2+침실3/실내기4대	7,300,000	
	84A, 84B, 84C, 84T1, 84T2	LG/삼성	일반형:거실+침실1/실내기2대	3,700,000	
		LG/삼성	일반형:거실+침실1+침실2+침실3/실내기4대	6,500,000	
		LG	프리미엄형:거실+침실1/실내기2대	4,100,000	
		LG	프리미엄형:거실+침실1+침실2+침실3/실내기4대	7,300,000	
	140P	LG/삼성	일반형:거실+주방+침실1/실내기3대	6,090,000	
		LG/삼성	일반형:거실+주방+침실1+침실4/실내기4대	7,590,000	
		LG/삼성	일반형: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실내기6대	9,680,000	
		LG	프리미엄형:거실+주방+침실1/실내기3대	6,690,000	
LG		프리미엄형:거실+주방+침실1+침실4/실내기4대	8,390,000		
LG		프리미엄형: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실내기6대	10,880,000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모델번호는 실별로 상이하고 표기량이 많아 추가선택품목 판매 시 안내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실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의 출시, 시장 상황의 변화 등 당초 계약모델의 타 모델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공정상의 사유로 계약 이후 추가, 변경, 해지가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제조사 사양에 따라 실내기 또는 실외기 규격이 정해집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리모콘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 수량에 따라 실외기 용량 또는 개수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등기구, 환기디퓨저등 천장 시설물 위치에 따라 실내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환기디퓨저, 욕실 배기팬, 스프링클러, 천장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운전소음이 발생함에 따라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바람 토출구에 이슬이 맺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외부 온도 대비 5도씨 이내로 설정하며 바람세기를 강풍으로 바람날개 방향을 좌우, 상하 반복하여 움직여서 가동해 주시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실외기 설치 공간에 냉매배관 및 응축수 배관이 일부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별도의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운전 시 반드시 실외기실 그릴을 개방해야 하며, 그릴을 닫고 운전하거나 그릴창 주변에 물건을 적치할 경우 성능 및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세대 내 구조, 실내기 선택 수량, 운전 조건 또는 실내 환경 등에 따라 냉방 사각지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시운전을 위해 보양지가 제거되며, 입주 시 보양지가 제거된 상태로 공급되게 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미선택 시 입주 후 개별 시공하는 경우 배관, 실내기, 실외기 추가 설치 및 전기 추가 공사가 필요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미선택 시 입주 후 개별 시공하는 배관, 실내기 및 실외기등 추가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시공사와 무관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본 아파트의 시공사에게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미선택 시 에어컨은 하향실 피난사다리 및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미선택 시 추후 입주자 별도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 홈네트워크 시스템 및 월패드 시스템 연동이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LG일반형과 LG프리미엄형은 세대 내 혼용 선택 불가합니다. (LG 제조사 기술적 호환 불가)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미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하는 천장형 냉매배관이 설치되어 스탠드형이나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가 불가합니다. (입주 후 스탠드형이나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를 원하는 경우 별도의 공사가 필요 함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미선택 시 LG브랜드 기준으로 천장형 냉매배관이 제공됩니다. 입주 후 삼성전자 등의 타사 에어컨 제품 설치 시 호환성 및 성능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확인하시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II) 납부일정

계약금(10%)	중도금(30%)	잔금(60%)
계약 시	2026.10.20	입주 시(입주지정기간 내)

■ 추가선택품목(II)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우리은행	1005-204-897668	디엘이앤씨(주)
계약체결 일정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시		

※ 상기 추가선택품목(II)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급대금 납부계좌는 아파트 공급대금 및 추가선택품목(I), (III)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301호 계약자 → '1010301홍길동'

※ 계약금 납부는 무통장 입금 및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주택전시관에서 일체의 현금·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주택전시관 수납 불가 및 신용카드 결제 불가)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라 처리됩니다.

■ 추가선택품목(III)

※ 추가선택품목(III)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납부금액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디 셀렉션 인테리어 스타일 선택

※ 스타일 선택시 스타일별로 구성된 내용은 변경이 불가하고 각 스타일간 개별품목의 교차 선택은 불가합니다.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타입)	품목	구성	구성	판매가격	비고
36A	내추럴 모던	현관	신발장(수입 푸트라 PET)	4,520,000	※ 디 셀렉션 인테리어 스타일 선택 시, 해당 스타일의 구성은 변경할 수 없으며, 스타일간 개별 품목의 교차 선택은 불가함
		주방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주방 상하부장(수입 푸트라 PET) +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가구 조명		
	소프트 클래식	현관	신발장(수입 푸트라 PET)	5,050,000	
		주방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주방 상하부장(수입 푸트라 PET) +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몬테비소)+가구 조명		
36B	내추럴 모던	현관	신발장(수입 푸트라 PET)	4,520,000	
		주방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주방 상하부장(수입 푸트라 PET) +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가구 조명		
	소프트 클래식	현관	신발장(수입 푸트라 PET)	5,050,000	
		주방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주방 상하부장(수입 푸트라 PET) +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몬테비소)+가구 조명		
44A	내추럴 모던	현관	신발장(수입 푸트라 PET)	4,970,000	
		주방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주방 상하부장(수입 푸트라 PET) +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가구 조명		
	소프트 클래식	현관	신발장(수입 푸트라 PET)	5,520,000	
		주방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주방 상하부장(수입 푸트라 PET) +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몬테비소)+가구 조명		
44B	내추럴 모던	현관	신발장(수입 푸트라 PET)	4,970,000	
		주방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주방 상하부장(수입 푸트라 PET) +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가구 조명		
	소프트 클래식	현관	신발장(수입 푸트라 PET)	5,520,000	
		주방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주방 상하부장(수입 푸트라 PET) +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몬테비소)+가구 조명		

51A	내추럴 모던	현관	신발장(수입 푸트라 PET)	5,010,000
		주방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주방 상하부장(수입 푸트라 PET) +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가구 조명	
	소프트 클래식	현관	신발장(수입 푸트라 PET)	5,570,000
		주방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주방 상하부장(수입 푸트라 PET) +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몬테비소)+가구 조명	
51B	내추럴 모던	현관	신발장(수입 푸트라 PET)	5,030,000
		주방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주방 상하부장(수입 푸트라 PET) +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가구 조명	
	소프트 클래식	현관	신발장(수입 푸트라 PET)	5,610,000
		주방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주방 상하부장(수입 푸트라 PET) +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몬테비소)+가구 조명	
51C	내추럴 모던	현관	신발장(수입 푸트라 PET)	5,030,000
		주방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주방 상하부장(수입 푸트라 PET) +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가구 조명	
	소프트 클래식	현관	신발장(수입 푸트라 PET)	5,580,000
		주방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주방 상하부장(수입 푸트라 PET) +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몬테비소)+가구 조명	
59A	내추럴 모던	현관	신발장(수입 푸트라 PET)	10,760,000
		주방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선반 수납형 키큰장(수입 푸트라 PET) +주방 상하부장(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가구 조명	
		침실1	건식세면대(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 +유럽형 방우 콘센트+벽부형 조명+외산 탑볼 세면기(아메리칸스탠다드) +외산 탑볼 세면기 수전(한스그로헤)+슬림형 수건걸이+침실1 드레스룸 가구도어	
	소프트 클래식	현관	신발장(수입 푸트라 PET)	12,370,000
		주방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선반 수납형 키큰장(수입 푸트라 PET) +주방 상하부장(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몬테비소)+가구 조명	
		침실1	건식세면대(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몬테비소) +유럽형 방우 콘센트+벽부형 조명+외산 탑볼 세면기(아메리칸스탠다드) +외산 탑볼 세면기 수전(한스그로헤)+슬림형 수건걸이+침실1 드레스룸 가구도어	
59B	내추럴 모던	현관	신발장(수입 푸트라 PET)+가구 도어(수입 푸트라 PET)	11,030,000
		주방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주방 상하부장(수입 푸트라 PET) +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가구 조명	
		침실1	건식세면대(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 +유럽형 방우 콘센트+벽부형 조명+외산 탑볼 세면기(아메리칸스탠다드) +외산 탑볼 세면기 수전(한스그로헤)+슬림형 수건걸이+침실1 드레스룸 가구도어	
	소프트 클래식	현관	신발장(수입 푸트라 PET)+가구 도어(수입 푸트라 PET)	12,640,000
		주방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주방 상하부장(수입 푸트라 PET) +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몬테비소)+가구 조명	

		침실1	건식세면대(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몬테비소) +유럽형 방우 콘센트+벽부형 조명+외산 탐볼 세면기(아메리칸스탠다드) +외산 탐볼 세면기 수전(한스그로헤)+슬림형 수건걸이+침실1 드레스룸 가구도어	
84A	내추럴 모던	현관	신발장(수입 푸트라 PET)+가구 도어(수입 푸트라 PET)	11,510,000
		주방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선반 수납형 키큰장(수입 푸트라 PET) +주방 상하부장(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가구 조명	
		침실1	건식세면대(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 +유럽형 방우 콘센트+벽부형 조명+외산 탐볼 세면기(아메리칸스탠다드) +외산 탐볼 세면기 수전(한스그로헤)+슬림형 수건걸이+침실1 드레스룸 가구도어	
	소프트 클래식	현관	신발장(수입 푸트라 PET)+가구 도어(수입 푸트라 PET)	13,080,000
		주방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선반 수납형 키큰장(수입 푸트라 PET) +주방 상하부장(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몬테비소)+가구 조명	
		침실1	건식세면대(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몬테비소) +유럽형 방우 콘센트+벽부형 조명+외산 탐볼 세면기(아메리칸스탠다드) +외산 탐볼 세면기 수전(한스그로헤)+슬림형 수건걸이+침실1 드레스룸 가구도어	
84B	내추럴 모던	현관	신발장(수입 푸트라 PET)+가구 도어(수입 푸트라 PET)	11,010,000
		주방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주방 상하부장(수입 푸트라 PET) +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가구 조명	
		침실1	건식세면대(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 +유럽형 방우 콘센트+벽부형 조명+외산 탐볼 세면기(아메리칸스탠다드) +외산 탐볼 세면기 수전(한스그로헤)+슬림형 수건걸이+침실1 드레스룸 가구도어	
	소프트 클래식	현관	신발장(수입 푸트라 PET)+가구 도어(수입 푸트라 PET)	12,580,000
		주방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주방 상하부장(수입 푸트라 PET) +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몬테비소)+가구 조명	
		침실1	건식세면대(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몬테비소) +유럽형 방우 콘센트+벽부형 조명+외산 탐볼 세면기(아메리칸스탠다드) +외산 탐볼 세면기 수전(한스그로헤)+슬림형 수건걸이+침실1 드레스룸 가구도어	
84C	내추럴 모던	현관	신발장(수입 푸트라 PET)+가구 도어(수입 푸트라 PET)	13,290,000
		주방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선반 수납형 키큰장(수입 푸트라 PET) +주방 상하부장(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가구 조명	
		침실1	건식세면대(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 +유럽형 방우 콘센트+벽부형 조명+외산 탐볼 세면기(아메리칸스탠다드) +외산 탐볼 세면기 수전(한스그로헤)+슬림형 수건걸이+침실1 드레스룸 가구도어	
	소프트 클래식	현관	신발장(수입 푸트라 PET)+가구 도어(수입 푸트라 PET)	15,290,000
		주방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선반 수납형 키큰장(수입 푸트라 PET) +주방 상하부장(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몬테비소)+가구 조명	
		침실1	건식세면대(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몬테비소) +유럽형 방우 콘센트+벽부형 조명+외산 탐볼 세면기(아메리칸스탠다드) +외산 탐볼 세면기 수전(한스그로헤)+슬림형 수건걸이+침실1 드레스룸 가구도어	

84T1 84T2	내추럴 모던	현관	신발장(수입 푸트라 PET)+가구 도어(수입 푸트라 PET)	12,090,000	
		주방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선반 수납형 키큰장(수입 푸트라 PET) +주방 상하부장(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가구 조명		
		침실1	건식세면대(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 +유럽형 방우 콘센트+벽부형 조명+외산 탑볼 세면기(아메리칸스탠다드) +외산 탑볼 세면기 수전(한스그로헤)+슬림형 수건걸이+침실1 드레스룸 가구도어		
	소프트 클래식	현관	신발장(수입 푸트라 PET)+가구 도어(수입 푸트라 PET)	14,020,000	
		주방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선반 수납형 키큰장(수입 푸트라 PET) +주방 상하부장(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몬테비소)+가구 조명		
		침실1	건식세면대(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몬테비소) +유럽형 방우 콘센트+벽부형 조명+외산 탑볼 세면기(아메리칸스탠다드) +외산 탑볼 세면기 수전(한스그로헤)+슬림형 수건걸이+침실1 드레스룸 가구도어		
140P	내추럴 모던	현관	신발장(수입 푸트라 PET)+가구 도어(수입 푸트라 PET)	15,020,000	
		주방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선반 수납형 키큰장(수입 푸트라 PET) +주방 상하부장(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가구 조명		
		침실1	침실1 드레스룸 가구도어		
		침실4	건식세면대(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 +유럽형 방우 콘센트+벽부형 조명+외산 탑볼 세면기(아메리칸스탠다드) +외산 탑볼 세면기 수전(한스그로헤)+슬림형 수건걸이		
	소프트 클래식	현관	신발장(수입 푸트라 PET)+가구 도어(수입 푸트라 PET)	17,110,000	
		주방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선반 수납형 키큰장(수입 푸트라 PET) +주방 상하부장(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몬테비소)+가구 조명		
		침실1	침실1 드레스룸 가구도어		
		침실4	건식세면대(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몬테비소) +유럽형 방우 콘센트+벽부형 조명+외산 탑볼 세면기(아메리칸스탠다드) +외산 탑볼 세면기 수전(한스그로헤)+슬림형 수건걸이		

■ 현관가구/중문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목	약식표기 (타입)	구성	판매가격	비고
공통	현관 중문	36A, 36B	3연동 도어	1,800,000	-
		44A, 44B, 51A, 51B, 51C	스윙 도어	1,900,000	
		59A, 59B, 84A, 84B, 84C, 84T1, 84T2, 140P	슬라이딩 도어	1,500,000	

미니멀	오픈형 프리미엄 신발장	59A	오픈형 신발장(PET)+신발살균기+에어브러시 +가구 조명+엔지니어드 스톤(래디언스-실버쉐이드)	1,620,000	※ 디 셀렉션 인테리어 스타일 선택시 구매 가능
	오픈형 프리미엄 신발장 +팬트리 도어	59B	오픈형 신발장(PET)+신발살균기 +에어브러시+가구 도어(PET)+가구 조명 +엔지니어드 스톤(래디언스-실버쉐이드)	2,300,000	
		84A, 84C		2,230,000	
		84B		2,350,000	
		84T1, 84T2		2,270,000	
		140P		2,480,000	
내추럴 모던	오픈형 프리미엄 신발장	59A	오픈형 신발장(수입 푸트라 PET)+신발살균기+에어브러시 +가구 조명+엔지니어드 스톤(래디언스-실버쉐이드)	1,600,000	
	오픈형 프리미엄 신발장 +팬트리 도어	59B	오픈형 신발장(수입 푸트라 PET)+신발살균기 +에어브러시+가구 도어(수입 푸트라 PET)+가구 조명 +엔지니어드 스톤(래디언스-실버쉐이드)	1,940,000	
		84A		1,900,000	
		84B		1,970,000	
		84C		1,900,000	
		84T1, 84T2		1,910,000	
140P	2,200,000				
소프트 클래식	오픈형 프리미엄 신발장	59A	오픈형 신발장(수입 푸트라 PET)+신발살균기+에어브러시 +가구 조명+엔지니어드 스톤(래디언스-실버쉐이드)	1,680,000	
	오픈형 프리미엄 신발장 +팬트리 도어	59B	오픈형 신발장(수입 푸트라 PET)+신발살균기+에어브러시 +가구 도어(수입 푸트라 PET)+가구 조명 +엔지니어드 스톤(래디언스-실버쉐이드)	2,050,000	
		84A		2,000,000	
		84B		2,080,000	
		84C		2,000,000	
		84T1, 84T2		2,020,000	
140P	2,330,000				

■ 거실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목	약식표기 (타입)	구성	판매가격	비고
미니멀	원목마루	36A, 36B	캠리아이보리(11.5T)	2,260,000	-
		44A, 44B		3,060,000	
		51A		3,720,000	

		51B		3,870,000	
		51C		3,900,000	
		59A		5,410,000	
		59B		4,750,000	
		84A		6,640,000	
		84B		6,420,000	
		84C		6,130,000	
		84T1, 84T2		6,310,000	
		140P		11,060,000	
내추럴 모던	원목마루	36A, 36B	캠리아이보리(11.5T)	2,260,000	※ 디 셀렉션 인테리어 스타일 선택시 구매 가능
		44A, 44B		3,060,000	
		51A		3,720,000	
		51B		3,870,000	
		51C		3,900,000	
		59A		5,410,000	
		59B		4,750,000	
		84A		6,640,000	
		84B		6,420,000	
		84C		6,130,000	
		84T1, 84T2		6,310,000	
		140P		11,060,000	
소프트 클래식	원목마루	36A, 36B	딤그레이(11.5T)	2,260,000	
		44A, 44B		3,060,000	
		51A		3,720,000	
		51B		3,870,000	
		51C		3,900,000	
		59A		5,410,000	
		59B		4,750,000	
		84A		6,640,000	
		84B		6,420,000	

		84C		6,130,000	
		84T1, 84T2		6,310,000	
		140P		11,060,000	
공통	디자인 월	36A, 36B	거실/복도면(냉장고자리 제외)	4,020,000	-
		44A		3,590,000	
		44B		3,320,000	
		51A		4,040,000	
		51B		3,930,000	
		51C		3,680,000	
		59A		거실/복도면(기본 제공 및 냉장고자리 제외)	
		59B	2,660,000		
		84A	2,650,000		
		84B	3,160,000		
		84C	2,850,000		
		84T1, 84T2	2,790,000		
		140P	4,620,000		
		디자인 월 ※침실/거실 와이드 붙박이장 선택시	36A, 36B	거실/복도면(냉장고자리 제외)	
	디자인 월 ※아일랜드장 선택시	84C	거실/복도면(기본 제공 및 냉장고자리 제외)	2,930,000	
	디자인 월 ※아일랜드장+주방 후면 인출식 수납형 키큰장 선택시	84C	거실/복도면(기본 제공 및 냉장고자리 제외)	2,800,000	
	인피니티 도어 ※디자인 월 선택시 구매 가능	44A, 44B	인피니티 도어+가구 도어(PP)	3,370,000	
		51A, 51B, 51C		5,250,000	
	인피니티 도어(침실1)	59A, 59B, 84A, 84C, 84T1, 84T2	인피니티 도어	1,350,000	
	인피니티 도어(침실4)	140P	인피니티 도어	1,350,000	
	인피니티 도어(전체) ※디자인 월 선택시 구매 가능	59B, 84A, 84C, 84T1, 84T2	인피니티 도어	5,400,000	
59A, 84B		인피니티 도어+가구 도어(PP)	5,400,000		
140P			6,750,000		

■ 주방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목	약식표기 (타입)	구성	판매가격	비고
미니멀	냉장고장	36A, 36B	냉장고장(PET)	530,000	※ 타입별 냉장고장 사이즈 상이
		44A, 44B, 51A, 51B, 51C		550,000	
		59B		1,170,000	
		84B		1,140,000	
		59A	냉장고장(PET)+선반 수납형 키큰장(PET)	1,600,000	
		84A		1,480,000	
		84C		1,920,000	
		84T1, 84T2		1,520,000	
		140P		1,860,000	
	아일랜드장	44A, 44B, 51A, 51B, 51C	바 타입형 아일랜드장(PET)+엔지니어드 스톤(래디언스-골든쇼어) +밥솥장 콘센트	990,000	-
		59A	아일랜드장 기본형(PET)+엔지니어드 스톤(래디언스-골든쇼어) +무선충전 상판매입 콘센트+밥솥장 콘센트	2,150,000	
		59B		1,540,000	
		84A		2,450,000	
		84B		2,270,000	
		84T1, 84T2		2,400,000	
		84C		아일랜드장 기본형(PET)+엔지니어드 스톤(래디언스-골든쇼어) +무선충전 상판매입 콘센트+건식 벽체+밥솥장 콘센트	
	식탁결합형 아일랜드장	59B	식탁결합형 아일랜드장(PET)+엔지니어드스톤(래디언스-골든쇼어) +무선충전 상판매입 콘센트+밥솥장 콘센트	2,620,000	
	양면수납 식탁결합형 아일랜드장	84C	양면수납 식탁결합형 아일랜드장(PET)+엔지니어드스톤(래디언스-골든쇼어) +무선충전 상판매입 콘센트+건식 벽체+밥솥장 콘센트	4,660,000	
	양면수납형 아일랜드장	140P	양면수납형 아일랜드장(PET)+엔지니어드스톤(래디언스-골든쇼어) +무선충전 상판매입 콘센트+밥솥장 콘센트	3,500,000	
주방 후면 인출식 수납형 키큰장 ※아일랜드장 선택시 구매 가능	84C	대형 인출식 수납형 키큰장(PET)	2,580,000	-	
내추럴 모던	아일랜드장	44A, 44B, 51A, 51B, 51C	바 타입형 아일랜드장(수입 푸트라 PET) +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밥솥장 콘센트	1,420,000	

		59A	아일랜드장 기본형(수입 푸트라 PET) +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 +무선충전 상판매입 콘센트+밥솥장 콘센트	3,010,000	※ 디 셀렉션 인테리어 스타일 선택시 구매 가능 ※ 59B/84C는 아일랜드장 택1 구매 가능
		59B		2,090,000	
		84A		3,410,000	
		84B		3,180,000	
		84T1, 84T2		3,340,000	
		84C		3,050,000	
	식탁결합형 아일랜드장	59B	식탁결합형 아일랜드장(수입 푸트라 PET) +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 +무선충전 상판매입 콘센트+밥솥장 콘센트	3,670,000	
	양면수납 식탁결합형 아일랜드장	84C	양면수납 식탁결합형 아일랜드장(수입 푸트라 PET) +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 +무선충전 상판매입 콘센트+건식 벽체+밥솥장 콘센트	5,000,000	
	양면수납형 아일랜드장	140P	양면수납형 아일랜드장(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무선충전 상판매입 콘센트+밥솥장 콘센트	4,960,000	
	주방 후면 인출식 수납형 키큰장 ※아일랜드장 선택시 구매 가능	84C	대형 인출식 수납형 키큰장(수입 푸트라 PET)	2,940,000	
소프트 클래식	아일랜드장	44A, 44B, 51A, 51B, 51C	바 타입형 아일랜드장(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 지-몬테비소)+밥솥장 콘센트	1,500,000	※ 디 셀렉션 인테리어 스타일 선택시 구매 가능 ※ 59B/84C는 아일랜드장 택1 구매가능
		59A	아일랜드장 기본형(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 몬테비소)+무선충전 상판매입 콘센트+밥솥장 콘센트	3,180,000	
		59B		2,230,000	
		84A		3,630,000	
		84B		3,360,000	
		84T1, 84T2		3,550,000	
		84C		3,220,000	
	식탁결합형 아일랜드장	59B		식탁결합형 아일랜드장(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 티지-몬테비소)+무선충전 상판매입 콘센트+밥솥장 콘센트	
	양면수납 식탁결합형 아일랜드장	84C	양면수납 식탁결합형 아일랜드장(수입 푸트라 PET) +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몬테비소) +무선충전 상판매입 콘센트+건식 벽체+밥솥장 콘센트	5,290,000	
	양면수납형 아일랜드장	140P	양면수납형 아일랜드장(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몬테비소)+무선충전 상판매입 콘센트+밥솥장 콘센트	5,270,000	
주방 후면 인출식 수납형 키큰장 ※아일랜드장 선택시 구매 가능	84C	대형 인출식 수납형 키큰장(수입 푸트라 PET)	3,030,000		
공통	외산주방수전	전타입	외산 주방 수전(한스그로헤)	650,000	-

■ 침실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약식표기 (티입)	품목	구성	판매가격	비고	
미니멀	36A, 36B	침실/거실 와이드 불박이장	불박이장(PET)	2,420,000	택1	
		침실/거실 와이드 불박이장 의류관리기형	불박이장(PET)+의류관리기장(PET)	2,350,000		
		침실/거실 와이드 불박이장 데스크형	불박이장(PET)+데스크형 불박이장(PET)+가구 조명+상판매입 콘센트	5,070,000		
		침실/거실 와이드 불박이장 파우더 결합형	불박이장(PET)+화장대(PET) +엔지니어드 스톤-래디언스/실버셰이드+콘센트+다운라이트	4,190,000		
	59A	침실1 와이드 불박이장	불박이장(PET)	2,160,000	택1	
		침실1 와이드 불박이장 의류관리기형	불박이장(PET)+의류관리기장(PET)	2,190,000		
	59B	침실1 와이드 불박이장	불박이장(PET)	2,180,000	택1	
		침실1 와이드 불박이장 의류관리기형	불박이장(PET)+의류관리기장(PET)	2,210,000		
	84A	침실1 와이드 불박이장	불박이장(PET)	2,290,000	택1	
		침실1 와이드 불박이장 의류관리기형	불박이장(PET)+의류관리기장(PET)	2,240,000		
	84B	침실1 와이드 불박이장	불박이장(PET)	2,150,000	택1	
		침실1 와이드 불박이장 의류관리기형	불박이장(PET)+의류관리기장(PET)	1,810,000		
	84C	침실1 와이드 불박이장	불박이장(PET)	2,130,000	택1	
		침실1 와이드 불박이장 의류관리기형	불박이장(PET)+의류관리기장(PET)	1,810,000		
	84T1, 84T2	침실1 와이드 불박이장	불박이장(PET)	2,160,000	택1	
		침실1 와이드 불박이장 의류관리기형	불박이장(PET)+의류관리기장(PET)	1,810,000		
140P	침실1 파우더 결합형 불박이장	가구 도어(PET)+화장대(PET)+엔지니어드 스톤(래디언스-골든쇼어)+콘센트+다운라이트+불박이장(PET) +건식 벽체+디자인 월	3,220,000	택1		
	침실1 파우더 결합형 불박이장 의류관리기형	가구 도어(PET)+화장대(PET)+엔지니어드 스톤(래디언스-골든쇼어)+콘센트+다운라이트+의류관리기장(PET) +건식 벽체+디자인 월	3,210,000			
	침실4 와이드 불박이장+파우더룸 불박이장	불박이장(PET)+디자인 월	2,130,000			
내추럴 모던	36A, 36B	침실/거실 와이드 불박이장	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	3,660,000	택1	
		침실/거실 와이드 불박이장 의류관리기형	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의류관리기장(수입 푸트라 PET)	3,550,000		
		침실/거실 와이드 불박이장 데스크형	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 +데스크(수입 푸트라 PET)+가구 조명+상판매입 콘센트	7,340,000		
		침실/거실 와이드 불박이장 파우더 결합형	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화장대(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콘센트+다운라이트+벽부형 조명	6,030,000		

	59A	침실1 와이드 불박이장	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	3,270,000	택1
		침실1 와이드 불박이장 의류관리기형	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의류관리기장(수입 푸트라 PET)	3,320,000	
	59B	침실1 와이드 불박이장	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	3,300,000	택1
		침실1 와이드 불박이장 의류관리기형	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의류관리기장(수입 푸트라 PET)	3,350,000	
	84A	침실1 와이드 불박이장	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	3,460,000	택1
		침실1 와이드 불박이장 의류관리기형	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의류관리기장(수입 푸트라 PET)	3,400,000	
	84B	침실1 와이드 불박이장	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	3,260,000	택1
		침실1 와이드 불박이장 의류관리기형	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의류관리기장(수입 푸트라 PET)	2,740,000	
	84C	침실1 와이드 불박이장	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	3,230,000	택1
		침실1 와이드 불박이장 의류관리기형	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의류관리기장(수입 푸트라 PET)	2,740,000	
	84T1, 84T2	침실1 와이드 불박이장	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	3,270,000	택1
		침실1 와이드 불박이장 의류관리기형	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의류관리기장(수입 푸트라 PET)	2,740,000	
	140P	침실1 파우더 결합형 불박이장	가구 도어(수입 푸트라 PET)+화장대(수입 푸트라 PET) +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콘센트+다운라이트 +벽부형 조명+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건식 벽체+디자인 월	4,690,000	택1
		침실1 파우더 결합형 불박이장 의류관리기형	가구 도어(수입 푸트라 PET)+화장대(수입 푸트라 PET) +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콘센트+다운라이트 +벽부형 조명+의류관리기장(수입 푸트라 PET)+건식 벽체+디자인 월	4,810,000	
140P	침실4 와이드 불박이장+파우더룸 불박이장	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디자인 월	2,680,000	-	
소프트 클래식	36A, 36B	침실/거실 와이드 불박이장	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	3,780,000	택1
		침실/거실 와이드 불박이장 의류관리기형	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의류관리기장(수입 푸트라 PET)	3,670,000	
		침실/거실 와이드 불박이장 데스크형	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데스크(수입 푸트라 PET) +가구 조명+상판매입 콘센트	7,580,000	
		침실/거실 와이드 불박이장 파우더 결합형	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화장대(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몬테비소)+콘센트+다운라이트+벽부형 조명	6,430,000	
	59A	침실1 와이드 불박이장	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	3,380,000	택1
		침실1 와이드 불박이장 의류관리기형	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의류관리기장(수입 푸트라 PET)	3,430,000	
	59B	침실1 와이드 불박이장	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	3,410,000	택1
		침실1 와이드 불박이장 의류관리기형	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의류관리기장(수입 푸트라 PET)	3,460,000	

※ 디 셀렉션 인테리어 스타일 선택시 구매가능

	84A	침실1 와이드 불박이장	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	3,580,000	택1		
		침실1 와이드 불박이장 의류관리기형	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의류관리기장(수입 푸트라 PET)	3,510,000			
	84B	침실1 와이드 불박이장	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	3,370,000	택1		
		침실1 와이드 불박이장 의류관리기형	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의류관리기장(수입 푸트라 PET)	2,830,000			
	84C	침실1 와이드 불박이장	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	3,330,000	택1		
		침실1 와이드 불박이장 의류관리기형	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의류관리기장(수입 푸트라 PET)	2,830,000			
	84T1, 84T2	침실1 와이드 불박이장	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	3,370,000	택1		
		침실1 와이드 불박이장 의류관리기형	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의류관리기장(수입 푸트라 PET)	2,830,000			
	140P	침실1 파우더 결합형 불박이장	가구 도어(수입 푸트라 PET)+화장대(수입 푸트라 PET) +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몬테비소)+콘센트+다운라이트 +벽부형 조명+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건식 벽체+디자인 월	5,040,000	택1		※ 디 셀렉션 인테리어 스타일 선택 시 구매 가능
		침실1 파우더 결합형 불박이장 의류관리기형	가구 도어(수입 푸트라 PET)+화장대(수입 푸트라 PET) +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몬테비소)+콘센트+다운라이트 +벽부형 조명+의류관리기장(수입 푸트라 PET)+건식 벽체+디자인 월	5,170,000			
침실4 와이드 불박이장+파우더룸 불박이장		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디자인 월	4,200,000	-			
공통	59A	침실1 스마트 스위트룸/내추럴	내추럴 헤드보드 침대+사이드테이블 1개 +다운라이트 특화(확산형)+독서등 1개 +통합컨트롤 조명제어시스템+스마트 전동커튼레일 2열	4,700,000	※ 스마트홈 연계조명 시스템 선택 시 구매 가능 ※ 내추럴, 브라운 중 택1 ※ 매트리스 제외		
	59B			4,700,000			
	84A			4,700,000			
	84B			4,700,000			
	84C			4,700,000			
	84T1, 84T2			4,700,000			
	140P			5,340,000			
	59A	침실1 스마트 스위트룸/브라운	브라운 헤드보드 침대+사이드테이블 1개 +다운라이트 특화(확산형)+독서등 1개 +통합컨트롤 조명제어시스템+스마트 전동커튼레일 2열	4,750,000			
	59B			4,750,000			
	84A			4,750,000			
	84B			4,750,000			
	84C			4,750,000			
	84T1, 84T2			4,750,000			
	140P			5,440,000			

			+통합컨트롤 조명제어시스템+스마트 전동커튼레일 2열		
140P	침실4 스마트 스위트룸/내추럴		내추럴 헤드보드 침대+사이드테이블 1개 +다운라이트 특화(확산형)+독서등 1개 +통합컨트롤 조명제어시스템+스마트 전동커튼레일 2열	4,700,000	
140P	침실4 스마트 스위트룸/브라운		브라운헤드보드 침대+사이드테이블 1개 +다운라이트 특화(확산형)+독서등 1개+통합컨트롤 조명제어시스템+스마트 전동커튼레일 2열	4,750,000	
59A	매트리스	ACE SUITE GRAND (킹사이즈, 가로1600mm, 세로2000mm, 높이320mm) ※ 침실1 스마트 스위트룸 선택 시 구매 가능		1,930,000	※ 침실1 스마트 스위트룸 선택 시 구매 가능
59B				1,930,000	
84A				1,930,000	
84B				1,930,000	
84C				1,930,000	
84T1. 84T2				1,930,000	
140P				1,930,000	
140P				1,930,000	
140P				ACE SUITE GRAND (킹사이즈, 가로1600mm, 세로2000mm, 높이320mm) ※ 침실4 스마트 스위트룸 선택 시 구매 가능	
51A	침실2 와이드 불박이장	불박이장(PET)		1,850,000	택1
	침실2 데스크형 불박이장	불박이장(PET)+데스크형 불박이장(PET)+가구 조명+상판매입 콘센트		3,590,000	
51B	침실2 와이드 불박이장	불박이장(PET)		2,080,000	택1
	침실2 데스크형 불박이장	불박이장(PET)+데스크형 불박이장(PET)+가구 조명+상판매입 콘센트		3,890,000	
51C	침실2 와이드 불박이장	불박이장(PET)		2,080,000	택1
	침실2 데스크형 불박이장	불박이장(PET)+데스크형 불박이장(PET)+가구 조명+상판매입 콘센트		3,890,000	
59A	침실2 불박이장	불박이장(PET)		1,160,000	택1
	침실2 데스크형 불박이장	불박이장(PET)+데스크형 불박이장(PET)+가구 조명+상판매입 콘센트		3,620,000	
59B	침실2 불박이장	불박이장(PET)		1,160,000	택1
	침실2 데스크형 불박이장	불박이장(PET)+데스크형 불박이장(PET)+가구 조명+상판매입 콘센트		3,620,000	
84A	침실2 불박이장	불박이장(PET)		1,170,000	택1
	침실2 데스크형 불박이장	불박이장(PET)+데스크형 불박이장(PET)+가구 조명+상판매입 콘센트		3,930,000	
84B	침실2 불박이장	불박이장(PET)		1,170,000	택1

		침실2 데스크형 불박이장	불박이장(PET)+데스크형 불박이장(PET)+가구 조명+상판매입 콘센트	3,890,000		
	84C	침실2 불박이장	불박이장(PET)	1,170,000	택1	
		침실2 데스크형 불박이장	불박이장(PET)+데스크형 불박이장(PET)+가구 조명+상판매입 콘센트	3,900,000		
	84T1, 84T2	침실2 불박이장	불박이장(PET)	1,170,000	택1	
		침실2 데스크형 불박이장	불박이장(PET)+데스크형 불박이장(PET)+가구 조명+상판매입 콘센트	3,950,000		
	140P	침실2 와이드 불박이장	불박이장(PET)	2,160,000	택1	
		침실2 데스크형 불박이장	불박이장(PET)+데스크형 불박이장(PET)+가구 조명+상판매입 콘센트	3,910,000		
	59A	침실3 불박이장	불박이장(PET)	1,160,000	택1	
		침실3 데스크형 불박이장	불박이장(PET)+데스크형 불박이장(PET)+가구 조명+상판매입 콘센트	3,620,000		
	59B	침실3 불박이장	불박이장(PET)	1,160,000	택1	
		침실3 데스크형 불박이장	불박이장(PET)+데스크형 불박이장(PET)+가구 조명+상판매입 콘센트	3,620,000		
	84A	침실3 와이드 불박이장	불박이장(PET)	2,190,000	택1	
		침실3 데스크형 불박이장	불박이장(PET)+데스크형 불박이장(PET)+가구 조명+상판매입 콘센트	3,930,000		
	84B	침실3 와이드 불박이장	불박이장(PET)	1,990,000	택1	
		침실3 데스크형 불박이장	불박이장(PET)+데스크형 불박이장(PET)+가구 조명+상판매입 콘센트	3,890,000		
	84C	침실3 와이드 불박이장	불박이장(PET)	2,160,000	택1	
		침실3 데스크형 불박이장	불박이장(PET)+데스크형 불박이장(PET)+가구 조명+상판매입 콘센트	3,900,000		
	84T1, 84T2	침실3 와이드 불박이장	불박이장(PET)	2,210,000	택1	
		침실3 데스크형 불박이장	불박이장(PET)+데스크형 불박이장(PET)+가구 조명+상판매입 콘센트	3,950,000		
	140P	침실3 불박이장	불박이장(PET)	1,170,000	택1	
		침실3 데스크형 불박이장	불박이장(PET)+데스크형 불박이장(PET)+가구 조명+상판매입 콘센트	3,910,000		

※ 침실3 불박이장 또는 데스크형 불박이장 중 택1

■ 조명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목	약식표기 (타입)	구성	판매가격	비고
공통	스마트홈 연계 조명 시스템/NGR형	36A, 36B	현관/거실/주방/복도 조명 다운라이트 특화(NGR)+거실 다운라이트 디밍 제어시스템 (12단계 밝기 조절)+거실 커튼박스 간접조명+욕실 센서미등 겸용 다운라이트 +욕실장 하부 간접조명+거실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	3,830,000	※ 타입별 욕실침실 개수에 맞춰 적용
		44A, 44B	현관/거실/주방/복도 조명 다운라이트 특화(NGR)	3,660,000	

		51A	+거실 다운라이트 디밍 제어시스템(12단계 밝기 조절)+거실 커튼박스 간접조명 +침실 디밍 제어시스템(12단계 색온도, 밝기 조절) +욕실 센서미등 겸용 다운라이트+욕실장 하부 간접조명 +거실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침실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	4,170,000	※ 스마트홈 연계 조명 시스템 선택 시 구매 가능
		51B		4,260,000	
		51C		4,140,000	
		59B		8,100,000	
		84A		8,370,000	
		84C		8,540,000	
		84T1, 84T2		8,590,000	
		140P		11,020,000	
	스마트홈 연계 조명 시스템/NGR형 ※ 주방 우물천장 간접조명 밝기조절 제외	59A	현관/거실/주방/복도 조명 다운라이트 특화(NGR)+우물천장 간접조명(12단계 밝기 제어)+거실 커튼박스 간접조명+침실 디밍 제어시스템(12단계 색온도, 밝기 조절) +욕실 센서미등 겸용 다운라이트+욕실장 하부 간접조명 +거실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침실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	9,570,000	
		84B		9,840,000	
	주방 마그네틱 트랙조명	59B	마그네틱 트랙조명	1,210,000	
		84A		1,610,000	
		84C		1,540,000	
		84T1, 84T2		1,710,000	
		140P		2,430,000	
주방 마그네틱 트랙조명	59A	마그네틱 트랙조명	1,440,000		
	84B		1,420,000		

■ 욕실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목	약식표기 (타입)	구성	판매가격	비고
공통	복합환풍기	36A, 36B, 44A, 44B, 51A, 51B, 51C	복합환풍기	650,000	
		59A, 59B, 84A, 84B, 84C, 84T1, 84T2		1,300,000	
		140P		1,950,000	
	고급형 샤워부스	36A, 36B, 44A, 44B, 51A, 51B, 51C, 59A, 59B, 84A, 84B, 84C, 84T1, 84T2	욕실1 적용	2,100,000	
	고급형 샤워부스/욕실3	140P	욕실3 적용	2,100,000	
고급형 샤워부스 +양변기 부스/욕실1	140P	욕실1 적용	4,870,000		

	고급형 샤워부스 +양변기 부스/욕실2	140P	욕실2 적용	2,700,000	
	욕실 고급형 패키지	36A, 36B, 44A, 44B, 51A, 51B, 51C	외산 세면기(아메리칸스탠다드)+외산 세면기 수전(한스그로헤) +외산 샤워수전(한스그로헤)+외산 안마샤워헤드(한스그로헤) +외산 비데일체형 양변기(아메리칸스탠다드)	3,840,000	
	욕실1 고급형 패키지	59A, 59B, 84A, 84B, 84C, 84T1, 84T2	외산 샤워수전(한스그로헤)+외산 안마샤워헤드(한스그로헤) +외산 비데일체형 양변기(아메리칸스탠다드)	3,390,000	
		140P	외산 언더볼 세면기(아메리칸스탠다드)+외산 세면기 수전(한스그로헤) +외산 욕조수전(한스그로헤)+외산 안마샤워헤드(한스그로헤) +외산 샤워수전(한스그로헤)+외산 비데일체형 양변기(아메리칸스탠다드)	4,980,000	
	욕실2 고급형 패키지	59A, 59B, 84A, 84B, 84C, 84T1, 84T2	외산 세면기(아메리칸스탠다드)+외산 세면기 수전(한스그로헤) +외산 욕조수전(한스그로헤)+외산 슬라이드바(한스그로헤)+외산 안마샤워헤드(한스 그로헤)+외산 비데일체형 양변기(아메리칸스탠다드)	3,510,000	
		140P	외산 언더볼 세면기(아메리칸스탠다드)+외산 세면기 수전(한스그로헤)+외산 샤워수 전(한스그로헤)+외산 안마샤워헤드(한스그로헤)+외산 비데일체형 양변기(아메리칸 스탠다드)	3,770,000	
	욕실3 고급형 패키지	140P	외산 샤워수전(한스그로헤)+외산 안마샤워헤드(한스그로헤)+외산 비데일체형 양변기(아메리칸스탠다드)	3,390,000	

■ 발코니(보조주방)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목	약식표기 (타입)	구성	판매가격	비고
공통	탄성코트	36A, 36B	세라믹 탄성코트	730,000	※ 주택형 별 적용 부위 상이하여 판매 시 별도 안내
		44A, 44B, 51A, 51B		630,000	
		51C		600,000	
		59A		820,000	
		59B		840,000	
		84A		750,000	
		84B		860,000	
		84C		800,000	
		84T1, 84T2		970,000	
		140P		720,000	
공통	손빨래 하부장	59A, 59B, 84A	손빨래 하부장+수전(국산)+MMA(샌디드구스)	1,290,000	-
		84B		1,330,000	
		84C, 84T1, 84T2, 140P		1,290,000	

■ 빌트인 가전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약식표기 (타입)	제조사	구성	판매가격	비고	
의류관리기		36A, 36B, 59A, 59B, 84A, 84B, 84C, 84T1, 84T2, 140P	LG	LG 스타일러 5벌(SC5MBR53)	1,800,000		※의류관리기장형 불박이장 선택 시 구매 가능
주방 저소음 렌지후드		전타입	-	D-사일런트 후드	780,000		-
빌트인 인덕션(택1)		전타입	경동나비엔	나비엔 매직 보더리스 인덕션 4구(ERI-7704)	1,950,000		-
		전타입	경동나비엔	나비엔 매직 인덕션 3구(ERI-6023)	820,000		
		전타입	삼성	삼성 인덕션 3구(NZ63B5056AK)	950,000		
빌트인 전기오븐(택1)		전타입	경동나비엔	나비엔 매직 컨벡션 스팀 오븐(EOB-5004)	650,000		-
		전타입	LG	LG 디오스 광파오븐(MZ385EBTA)	480,000		
		전타입	삼성	삼성 비스포크 오븐(NQ50T8539BK)	900,000		
빌트인 식기세척기		59A, 59B, 84A, 84B, 84C, 84T1, 84T2, 140P	LG	LG 디오스 14인용(DIE5PT)+콘센트	1,350,000		-
빌트인 드레스룸 제습기		44A, 44B, 51A, 51B, 51C, 59A, 84A, 84C, 84T1, 84T2, 140P	-	D-클로젯 브리즈(단독형)	1,500,000		-
실별 환기·공기청정 시스템 (택1)		59A, 59B, 84A, 84B, 84C, 84T1, 84T2	-	D-에어플래너+침실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침실1,2,3)	4,980,000		※스마트홈 연계조명 시스템 미선택 시
		140P		D-에어플래너+침실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침실1,2,3,4)	7,200,000		
		59A, 59B, 84A, 84B, 84C, 84T1, 84T2	-	D-에어플래너	4,830,000		※스마트홈 연계조명 시스템 선택 시
		140P			7,000,000		
빌트인 냉장고	미니멀	36A, 36B	LG	가전 맞춤형 냉장고장(PET)+LG 오브제 4도어 냉장고 M62BAAA332(G)	5,010,000	LG와 삼성 중 택1	※ 냉장고장 선택 시 구매 가능 ※ 빌트인 냉장고품목은 택1이며, 구성 및 디자인/위치/색상 변경불가 ※ 빌트인 냉장고 가전판매 가격에는 가전 맞춤형 냉장고장 설치시 증가 금액포함
		44A, 44B, 51A, 51B, 51C			5,040,000		
		59A		7,790,000			
		84A		7,740,000			
		84C		8,860,000			
		84T1, 84T2		7,770,000			
		140P		8,880,000			
		59B		6,620,000			
		84B		6,650,000			

		59A		가전 맞춤형 냉장고장(PET)+LG 시그니처 키친스위트 냉동고+냉장고 CF24+CL24+인출식수납형키큰장(PET)	31,610,000		※ 가전 맞춤형 냉장고장은 평형별, 가전별로 디자인 상세가 상이하여 판매시 별도 안내
		59B			31,520,000		
		84A			31,580,000		
		84B			30,460,000		
		84T1, 84T2			31,580,000		
		84C			32,150,000		
		140P		31,890,000			
		36A, 36B	삼성	가전 맞춤형 냉장고장(PET)+삼성 비스포크 4도어 냉장고 RM70F64Q1XJ(Satin)	4,700,000		
		44A, 44B, 51A, 51B, 51C			4,730,000		
		59A		가전 맞춤형 냉장고장(PET)+삼성 비스포크 1도어 냉동고+냉장고+김치냉장고 RZ34C7(9/8)65AP(Satin)+RR40C7(9/8)95AP(Satin)+RQ34C7(9/8)45AP(Satin)+인출식수납형키큰장(PET)	7,920,000		
		84A			7,870,000		
		84C			8,980,000		
		84T1, 84T2			7,900,000		
		140P			9,000,000		
		59B			가전 맞춤형 냉장고장(PET)+삼성 비스포크 1도어 냉동고+냉장고+김치냉장고 RZ34C7(9/8)65AP(Satin)+RR40C7(9/8)95AP(Satin)+RQ34C7(9/8)45AP(Satin)	6,750,000	
		84B			6,780,000		
		59A		가전 맞춤형 냉장고장(PET)+삼성 인피니트 1도어 냉동고+냉장고+김치냉장고 RZ38C9891APG(TimelessMetal)+RR40C9981APG(TimelessMetal)+RQ38C9991APG(TimelessMetal)+인출식수납형키큰장(PET)	18,320,000		
		84A			18,270,000		
		84C			19,380,000		
		84T1, 84T2			18,300,000		
		140P			19,400,000		
		59B	가전 맞춤형 냉장고장(PET)+삼성 인피니트 1도어 냉동고+냉장고+김치냉장고 RZ38C9891APG(TimelessMetal)+RR40C9981APG(TimelessMetal)+RQ38C9991APG(TimelessMetal)		17,150,000		
		84B		17,170,000			
내추럴 모던		36A, 36B	LG	가전 맞춤형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LG 오브제 4도어 냉장고 M62BAAA332(G)	5,260,000	LG와 삼성 중 택1	※ 디 셀렉션 인테리어 스타일 선택시 구매 가능 ※ 빌트인 냉장고품목은 택1이며, 구성 및 디자인/위치/색상 변경불가
		44A, 44B, 51A, 51B, 51C			5,310,000		
		59A		가전 맞춤형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LG 오브제 1도어 냉동고+냉장고+김치냉장고 BC1F4AA.AKOR(G)+BC1L4AA.AKOR(G)+BC1K4AA.AKOR(G)+인출식수납형키큰장(수입푸트라PET)	8,280,000		
		84A			8,370,000		
		84C			9,630,000		
		84T1, 84T2			8,410,000		

		140P			9,670,000		
		59B		가전 맞춤형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LG 오브제 1도어 냉동고+냉장고+김치냉장고	7,090,000		
		84B		BC1F4AA.AKOR(G)+BC1L4AA.AKOR(G)+BC1K4AA.AKOR(G)	7,130,000		
		59A		가전 맞춤형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 +LG 시그니처 키친스위트 냉동고+냉장고 CF24+CL24+인출식수납형키큰장(수입푸트라PET)	32,170,000		
		59B	32,040,000				
		84A	32,120,000				
		84B	30,840,000				
		84T1, 84T2	32,120,000				
		84C		가전 맞춤형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LG 시그니처 키친스위트 냉동고+냉장고	32,790,000		
		140P		CF24+CL24+인출식/선반수납형키큰장(수입푸트라PET)	32,580,000		
		36A, 36B	가전 맞춤형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삼성 비스포크 4도어 냉장고 RM70F64Q1XJ(Satin)	4,950,000		※ 빌트인 냉장고가전 판매가격에는 가전 맞춤형 냉장고장 설치시 증가 금액포함 ※ 가전맞춤형 냉장고장은 평형별, 가전별로 디자인 상세가 상이하여 판매시 별도 안내	
		44A, 44B, 51A, 51B, 51C		5,000,000			
		59A		8,410,000			
		84A		가전 맞춤형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삼성 비스포크 1도어 냉동고+냉장고+김치냉장고	8,490,000		
		84C		RZ34C7(9/8)65AP(Satin)+RR40C7(9/8)95AP(Satin)+RQ34C7(9/8)45AP(Satin) +인출식수납형키큰장(수입푸트라PET)	9,750,000		
		84T1, 84T2		8,530,000			
		140P		9,790,000			
		59B		가전 맞춤형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삼성 비스포크 1도어 냉동고+냉장고+김치냉장고	7,210,000		
		84B		RZ34C7(9/8)65AP(Satin)+RR40C7(9/8)95AP(Satin)+RQ34C7(9/8)45AP(Satin)	7,260,000		
		59A		가전 맞춤형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삼성 인피니트 1도어 냉동고+냉장고+김치냉장고	18,810,000		
		84A			18,890,000		
		84C			20,150,000		
		84T1, 84T2			18,930,000		
		140P			20,190,000		
		59B		가전 맞춤형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삼성 인피니트 1도어 냉동고+냉장고+김치냉장고	17,610,000		
		84B		RZ38C9891APG(TimelessMetal)+RR40C9981APG(TimelessMetal)+RQ38C99 91APG(TimelessMetal)	17,650,000		

소프트 클래식	36A, 36B	LG	가전 맞춤형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LG 오브제 4도어 냉장고 M62BAAA332(G)	5,420,000	LG와 삼성 중 택1	※ 디 셀렉션 인테리어 스타일 선택시 구매가능 ※ 빌트인 냉장고품목은 택1이며, 구성 및 디자인/위치/색상 변경불가 ※ 빌트인 냉장고 가전 판매가격에는 가전 맞춤형 냉장고장 설치시 증가 금액포함 ※ 가전 맞춤형 냉장고장은 평형별, 가전별로 디자인 상세가 상이하여 판매시 별도 안내
	44A, 44B, 51A, 51B, 51C			5,470,000		
	59A		가전 맞춤형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LG 오브제 1도어 냉동고+냉장고+김치냉장고 BC1F4AA.AKOR(G)+BC1L4AA.AKOR(G)+BC1K4AA.AKOR(G) +인출식수납형키큰장(수입푸트라PET)	8,500,000		
	84A			8,590,000		
	84C			9,880,000		
	84T1, 84T2			8,630,000		
	140P			9,920,000		
	59B			가전 맞춤형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LG 오브제 1도어 냉동고+냉장고+김치냉장고 BC1F4AA.AKOR(G)+BC1L4AA.AKOR(G)+BC1K4AA.AKOR(G)		
	84B		7,320,000			
	59A		가전 맞춤형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LG 시그니처 키친스위트 냉동고+냉장고 CF24+CL24+인출식수납형키큰장(수입푸트라PET)	33,020,000		
	59B			32,880,000		
	84A			32,960,000		
	84B			31,650,000		
	84T1, 84T2			32,960,000		
	84C	가전 맞춤형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LG 시그니처 키친스위트 냉동고+냉장고 CF24+CL24+인출식/선반수납형키큰장(수입푸트라PET)		33,650,000		
	140P		33,440,000			
	36A, 36B	삼성	가전 맞춤형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삼성 비스포크 4도어 냉장고 RM70F64Q1X(Satin)	5,100,000		
	44A, 44B, 51A, 51B, 51C			5,150,000		
	59A		가전 맞춤형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삼성 비스포크 1도어 냉동고+냉장고+김치냉장고 RZ34C7(9/8)65AP(Satin)+RR40C7(9/8)95AP(Satin)+RQ34C7(9/8)45AP(Satin) +인출식수납형키큰장(수입푸트라PET)	8,630,000		
	84A			8,720,000		
	84C			10,010,000		
	84T1, 84T2			8,760,000		
	140P			10,050,000		
	59B			가전 맞춤형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삼성 비스포크 1도어 냉동고+냉장고+김치냉장고 RZ34C7(9/8)65AP(Satin)+RR40C7(9/8)95AP(Satin)+RQ34C7(9/8)45AP(Satin)		
	84B		7,450,000			
	59A		가전 맞춤형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삼성 인피니트 1도어 냉동고+냉장고+김치냉장고 RZ38C9891APG(TimelessMetal)+RR40C9981APG(TimelessMetal)	19,300,000		
84A	19,390,000					

	84C	+RQ38C9991APG(TimelessMetal)+ 인출식수납형키큰장(수입푸트라PET)	20,680,000
	84T1, 84T2		19,430,000
	140P		20,720,000
	59B		18,080,000
	84B		18,120,000
		가전 맞춤형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삼성 인피니트 1도어 냉동고+냉장고+김치냉장고 RZ38C9891APG(TimelessMetal)+RR40C9981APG(TimelessMetal) +RQ38C9991APG(TimelessMetal)	

■ 추가선택품목(III) 납부일정

계약금(10%)	중도금(30%)	잔금(60%)
계약 시	2027.04.20.	입주 시(입주지정기간 내)

■ 추가선택품목(III) 공급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우리은행	1005-104-891225	디엘이앤씨(주)
계약체결 일정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 상기 추가선택품목(III) 공급대금 납부계좌는 아파트 공급대금 및 추가선택품목(I), (II)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급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301호 계약자 → '1010301홍길동'
- ※ 사업주체 또는 판매주체에서 제휴 신용카드사를 통해 결제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합니다.(신용카드결제 서비스 준비 중으로 서비스 제공이 취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 신용카드결제는 추가선택품목(III) 납부시에만 가능하며, 신용카드결제가 가능한 제휴 신용카드사 및 제반되는 결제조건, 수수료등에 대한 설명은 추후 안내됩니다.
-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점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계약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라 처리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판매가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시공사 디엘이앤씨(주)와 고객 간 직접계약 및 설치가 진행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판매금액에는 기본 설치 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의 증가비용을 정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별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설치공사는 공개된 품목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외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위약금 등에 대한 상세내용은 추가선택품목 계약서에 기재하고 체결하오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설치 시점에 이르러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단종(성능 개선, 디자인 변경 등의 사유) 시 동 제조사의 동급 이상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폐업, 부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조사의 제품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동급 이상의 타 제조사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발생 시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으며, 변경 제품을 확정하기 전에 변경 사유 및 내용을 계약자에게 통보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상품 구성, 제품 모델, 디자인(색상포함), 설치 위치, 판매 금액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공정상(발주 및 설치)의 사유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공급 계약이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중 스타일 선택 옵션은 인테리어 스타일의 통일성을 위하여 개별 분리 판매 및 스타일 간 교차 선택이 불가하며, 스타일별 디자인(색상 포함), 재질 및 구성은 상이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스타일 옵션 선택 시, 스타일과 연계된 개별 품목은 동일한 스타일 범위 내에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전, 가구, 조명, 스위치 등)의 디자인(색상 포함), 사양, 위치, 설치 방향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중 주방 상판/벽체, 거실 및 복도의 벽체, 마루 등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따라 두께 및 설치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욕실 배기팬은 설치되지 않습니다.(복합 환풍기 내 욕실팬 기능 있음)
- 욕실 복합 환풍기는 모드에 따른 운전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의 리모컨은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는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의 출시, 시장 상황의 변화 등 당초 계약모델의 타 모델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천장 내부 설비, 등기구의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손빨래 하부장 미선택 시, 별도의 급수 또는 배수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디사일런트후드(렌지후드) 선택 시 렌지후드 상부장 내부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디사일런트후드(렌지후드) 선택 유무와 상관 없이 상부장은 수납 목적이 아닌 후드 장비 및 자동식 소화기 등이 설치되는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빌트인 전기쿡탑 선택 유무에 상관없이 가스배관 및 차단기는 기존 위치에 설치됩니다.
- D에어플래너(실별환기) 가동 시 각 실내 환기구를 통해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운전 모드별 소음 및 진동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D에어플래너(실별환기) 실내 환기구의 위치 및 수량은 성능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D에어플래너(실별환기) 장비에는 외부 미세먼지를 일부 차단하는 청정필터가 설치되며, 필터는 연2회 이상 교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용 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D클로젯브리즈(빌트인제습기)는 운전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D클로젯브리즈(빌트인제습기)는 제습 운전 시 소자의 재생을 위해 주기적으로 욕실 환기와 연동되어 욕실 배기팬이 운전되며 이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확인하시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D클로젯브리즈(빌트인제습기)는 환기 운전 시 욕실 환기와 연동되어 욕실 배기팬이 운전되며 이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확인하시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D클로젯브리즈(빌트인제습기)의 리모컨은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D클로젯브리즈(빌트인제습기)는 공간 면적에 따라 제습 효과 및 운전 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D클로젯브리즈(빌트인제습기)는 선택 시 장비 및 배관에 의해 환기디퓨저, 스프링클러 , 조명기구 등의 위치가 이동(변경) 될 수 있습니다.
- D클로젯브리즈(빌트인제습기)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천장 내부 설비, 등기구의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D클로젯브리즈(빌트인제습기)는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의 출시, 시장 상황의 변화 등 당초 계약모델의 타 모델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중 가전과 불박이가구 설치 시 설치 부위의 노출되지 않는 가구 천장 및 바닥, 후면 및 측면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되며, 판매가격 산정 시 해당하는 설치 비용은 감액하여 책정하였습니다.
- 불박이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빌트인가전, 욕실장, 욕실거울, 욕조, 위생도기류 등]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불박이가구 옵션의 가구 수납형태 및 내부 구성과 규격은 주택형별,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가구의 디자인, 내부구성, 하드웨어 상세 등은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침실 내 창호 커튼박스는 불박이장 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와의 간섭으로 인해 커튼박스 크기,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 불박이장 옵션 선택 시 가려지는 벽체에 설치되는 콘센트 및 통신 포트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데스크형 불박이장 선택 시 가구 상판에만 매입형 콘센트가 설치되며 데스크 하부 벽에는 콘센트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니 사용 용도에 적합인지 확인하신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침실1을 제외한 침실2, 침실3 불박이장(데스크형 포함) 선택 시 스타일과 상관없이 미니멀 스타일로 적용됩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은 자재특성상 시공 이음매가 노출되며, 이음면의 위치는 현장의 여건에 따라 변경됩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은 인테리어 스타일에 따라 상이한 디자인이 설치되며, 엔지니어드 스톤 개별 선택은 불가 하므로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피니티 도어 상부 디테일이나 몰딩 마감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목창호, 인피니티도어에 손끼임 방지 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상세 스펙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디자인월 인피니티 도어 선택 시 욕실2도어 마감재는 디자인월과 패턴이 동일한 인테리어 시트지로 적용됩니다.
- 가구류(시스템가구 등)는 과도한 하중 적재 시 처짐이 생기거나 손상될 수 있으니,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스마트홈 연계 조명시스템에 포함된 거실 및 침실의 디밍 제어시스템은 입주 후 조명기구 및 스위치 교체 시 기능의 제한이 발생합니다.
- 스마트홈 연계 조명시스템 선택 시 다우나이트가 소형화되고 거실 직부등이 없으므로 기본형보다 어둡게 느껴질 수 있으며, 조명 특성상 하부에서 직접 광원을 바라볼 경우 눈부심이 있습니다. 생활 환경을 고려하여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홈 연계 조명시스템 선택 시 거실 조명제어 장치(릴레이)가 천장 내부에 설치되며,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현관 팬트리 등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홈 조명 연계시스템 선택 시 거실 커튼박스 간접조명은 별도의 등박스 없이 커튼박스 내부에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 스마트홈 조명 연계시스템 선택 시 욕실 내 조명 1개소는 센서 미등 겸용 다운라이트로 변경되며 스위치 점등 시 일반 조명과 동일하지만 스위치 소등 시 센서 기능을 통해 미등이 점등됩니다.

- 스타일 선택 및 가구, 가전 선택 여부에 따라 설치되는 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천장기구(조명포함)의 규격, 수량,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일랜드장 가구에 연결된 전선관 또는 케이블에 의해 위치 이동에 제약이 있습니다.
- 삼성 비스포크 및 인피니트, LG 오브제 및 시그니처 선택 시 안내한 바와 같이 세트 구성된 상품으로 판매하며, 상품의 조합, 디자인(색상 포함), 설치 위치, 결합 가구의 구성은 주택형 별로 상이할 수 있고 안내한 내용 외 변경 신청은 불가합니다.
- 삼성 비스포크 및 인피니트, LG 오브제 및 시그니처 설치 시 해당세대 대칭세대인 경우 구성품목의 설치위치가 좌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삼성 비스포크 및 인피니트, LG 오브제 및 시그니처 설치 시 타입에 따라 결합되는 가구가 상이하며, 공급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전기쿡탑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하는 3구 가스쿡탑은 설치 및 제공되지 않으며, 해당금액은 판매금액에서 차감 정산하였습니다.
- 빌트인 전기쿡탑 선택 유무에 상관없이 가스배관 및 차단기는 기존 위치에 설치됩니다.
- 빌트인 전기오븐은 아일랜드장 선택 시 구매 가능합니다.
- 입주 후 개별 시공하는 품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시공사와 무관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본 아파트의 시공사에게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판매가격은 판매시점의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후 원가 변동에 따른 감액 및 증액분은 반영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차액 정산, 감액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가전류는 판매시점의 모델이며 설치시점에 제품 단종등의 사유일 경우에는 동등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주택전시관 견본세대 및 사이버 주택전시관 홍보물상의 이미지와 실제 입주 시 느끼는 분위기, 마감색상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품질개선을 위하여 주택전시관 견본세대 및 사이버 주택전시관 홍보물 내용의 마감과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에 따라 인접하는 가구, 마감재, 벽체, 몰딩, 걸레받이, 커튼박스, 등기구, 스위치 및 콘센트 등의 위치와 수량, 형태가 홈페이지 홍보물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중 완제품으로 시공된 상품의 경우 제조사 서비스 내용과 하자는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 범위에서 제외되며, 하자 발생 시 제조사 보증 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에 한계가 있고, 전품목 전시 불가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체결 시 상세한 설명과 확인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미기재된 내용은 추후 추가선택품목 계약 시 안내 후 계약합니다.

11

유의사항 및 단지 내외부 여건 ※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음과 같은 주요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반사항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주택형 신청 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건물 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해야 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각 시설의 분양면적 합산면적 비율에 의해 배분하였으며, 공동주택의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의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각 세대별 공급금액 상이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별도의 분양시설인 근린생활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공동주택과 부지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근린생활시설의 전용 및 공용구간을 구조적으로 공유하고 있어,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 지분에 대한 구획 및 분할은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거나 관련법 위반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계약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입주 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장, PIT 등 공용부분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CS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 현황 및 현장 여건, 주변 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 주택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주택전시관 내 평면도(설계도면), 시방서, 마감자재 목록표를 비치하고 있으며, 청약 및 계약 전 도서 열람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을 이유로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의 공동주택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방식입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된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지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아파트는 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으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주택전시관은 2026년 04월 30일 승인된 사업시행계획승인도서(변경)를 기준으로 작성 되었으며, 향후 관할관청의 인·허가 협의 결과와 승인조건 이행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준공 도면에 의하여 시공됩니다
- 계약 전 단지 여건(기반시설 위치, 송전탑 등 혐오시설 유무, 주변 개발현황, 소음, 조망, 일조 등 단지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및 모형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단지 주변현황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되는 세대내부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추가선택품목, 연출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 등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되므로,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법정오차 범위 내 면적 증감에 대한 별도 정산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현재 대지 면적은 축진계획에 고시된 대지면적으로 산출된 것으로 준공 후 시행하는 지적확정측량시 면적이 감소할 수 있으며, 법정오차 초과하는 변동분에 대한 면적은 조합원 대지지분에서 조정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층별 공급금액이 상이합니다.
- 계약일 이후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지정·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도시 기반시설 계획 변경 등으로 규제 내용이 강화되어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단지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배치 및 층별, 향·동·호수별 위치, 주변건물의 신축 등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의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마감자재 등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 주택전시관에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전시관으로 운영되오니 계약 전 주택전시관 내 게시된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사이버 주택전시관 : www.acro.co.kr)
- 주택전시관에는 59A, 84B 주택형의 확장세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주택형은 사이버 주택전시관 또는 주택전시관에서 제공하는 분양홍보물을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 전에 주택형별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비확장 부분 등 주택전시관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분양홍보물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탑승위치 등)은 사업시행계획 인가도서에 의하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공사여건 등으로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유부를 제외한 공용부 관련 품질향상을 위한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은 조합 및 인허가청의 승인을 득하고 반영 될 예정이며, 향후 입주민의 동의서는 입주시 품질향상동의서로 같음합니다.
- 창호, 가구, 석재, 타일, 도배, 바닥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치수 등은 실 시공시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벽 및 바닥, 현관바닥, 주방 벽, 발코니 바닥 등의 타일나누기는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측정결과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각종 인쇄물 내 단지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정선형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적합한 세대 내 일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홍보 카탈로그, 사이버 주택전시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도로, 학교,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 조성계획은 각종 기반시설 시행주체가 계획또는 예정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 법령의 신설 및 개정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통보 합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공사 중 계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주인 사전점검 행사 전 샘플세대 공개행사 및 개별세대 방문을 진행하지 않으며, 현장방문허가 없이 무단 현장침입 등을 통한 현장방문 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아파트 및 단지 공사현장 내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경관조명 및 태양광 발전설비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에치금을 부과합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관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의해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인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공급 계약해지(해제)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아파트 하자보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등에 따라 적용됩니다.
- 사업 완료 후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시설 및 공용부 등의 내부시설의 사후관리는 입주인이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신속한 하자처리를 목적으로 지하주차장, 동PIT 일부 공간에 관련 자재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특성상 위치, 크기, 동선 등의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주택(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및 기타 공용면적(부대 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은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됩니다.
- 계약자(입주자)는 본 계약 외 발코니 확장 부위에 개인적으로 시공·설치한 바닥 단열 및 마감재, 사시, 실외기실 루버 등의 제반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 또는 사이버 주택전시관에 기재된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치수 등은 실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지하주차장 등)의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 합,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 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녹지) 등의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 등은 현장 실 시공 시 주택전시관에 게시된 투시도 및 배치도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녹지) 등의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 등은 현장 실 시공 시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인접 건물에 의해 조망, 일조 등이 침해될 수 있으니 청약예정자 및 계약예정자는 필히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케팅을 위하여 제작된 약도 및 지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위한 제작물이므로 청약예정자 및 계약예정자는 필히 현장 및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원활하고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해 CS 사무실을 주차장, 부대 복리시설(커뮤니티), PIT 일부 등 공용부에 설치하여 무상(2년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 자재(수전, 위생기구, 액세서리 및 콘센트)의 설치 위치는 마감 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주택전시관에 기재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사용검사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 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분양신청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주택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주택전시관에 비치된 설계도서, 마감재료표, 계약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모집요건을 확보하였습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 입주자모집 조건 제1항에 의거 사업주체는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 대지에 저당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가처분·전세권·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 등(이하 "저당권등"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해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사업주체가 영 제71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용자를 받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저당권등을 설정한 경우
 2. 저당권등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 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저당권등을 말소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구분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가. 「도로법」 제28조에 따른 구분지상권
 - 나. 「도시철도법」 제12조에 따른 구분지상권
 - 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른 구분지상권
- 부대복리시설의 실별 용도 및 면적,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구조물의 형태나 주동 입면의 패턴, 색채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관련 유의사항

- 주택전시관에 기재된 건립세대의 내부치수는 실제 시공 시 법규상에서 인정하는 범위내의 시공오차 등으로 인하여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시공되는 건축법상의 하향식 피난구는 주택전시관에 구현된 하향식 피난구와 제품사양 및 힌지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주택전시관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투시도 등의 외부 색채의 세부사항은 본 공사 시 상이할 수 있으며, 각종 심의 및 협의 등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주택전시관, 분양홍보물 등에 기재된 견본세대 CG는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을 위해 전평형 발코니 확장형으로 표현하였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단지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 현황 등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 선형은 인허가 과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실제 시공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기는 주택전시관용 전시용품으로 본공사 시 설치되는 장비 사양 및 위치와는 무관하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환기유닛, 환기디퓨저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도기류, 수전류, 욕조, 배수구, 온도조절기 등 설비 기구류들의 제조사,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각종 점검구의 사이즈, 위치 및 수량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본공사 시 가스배관의 위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본공사 시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됩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제 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견본세대 및 단위세대 CG는 전평형 발코니 확장형으로 연출되어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은 일정 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주택전시관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동일 주택형이라도 주택전시관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 시공된 제품 및 사이버 주택전시관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등급,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분양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전시관의 전시품(모형 등) 및 연출용 시공부분, 홍보자료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인-허가 조건이행 및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의 전시품(모형 등)에 제시된 저층부 필로티 등 입면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향후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주택전시관, 사이버 주택전시관 상의 마감재리스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면과 상이할 경우 주택전시관을 우선으로 함)
- 견본세대에 설치된 내·외부 창호는 본 공사 시 업체, 규격,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도서(단위세대 전등, 전열 배선도)의 단위세대 배선기기(스위치, outlet 등), 조명, 통신 단자함, 세대분전함의 위치, 수량, 사양 등은 주택전시관에 따르며, 본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분양홍보물 및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등), 조경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등은 설계 및 인-허가 조건 이행,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창의 크기, 재질, 색상, 디자인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실별 용도 및 면적,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구조물의 형태나 주동 입면의 패턴, 색채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및 분양홍보물 등에는 주택형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편의를 위하여 약식으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견본세대에 설치된 하향식 피난구는 실제 화재 시 피난을 위한 사다리개 설치되며, 하향식 피난구는 최하층 세대를 제외한 전 세대에 설치됩니다. 하향식 피난구 사양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시공되는 건축법상의 하향식 피난구는 주택전시관 견본세대에 설치된 하향식 피난구와 제품사양 및 힌지 방향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비상조명, 시각경보기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 사양 및 위치, 색온도 등은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견본세대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세대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사이버 주택전시관에 게시된 마감재 및 견본세대 안내 영상홍보물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제와 달라 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한 가구 또는 평면 변경에 따라 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천장기구(조명 포함)의 규격, 수량,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PVC창호 및 도어의 프레임 형태, 개폐방향, 하드웨어 등의 사양은 제조사에 따라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건립타입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건립평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에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분양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 적용된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분양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전시관 내에는 공급금액에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커튼,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고정형/이동형 장식품, 가전제품 및 기기 등 모든 전시품 포함)은 설치되지 않으며, 사업시행계획승인도서에 따라 시공됩니다.
- 주택전시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단지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단지 모형의 조경계획 및 식재, 시설물, 주민운동시설, D/A, 대형음식을 이송설비, 자전거보관대, 수경시설, 포장, 주변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 또는 삭제, 추가될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모형상에 생략되어 있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이버 주택전시관의 VR은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이므로 사이버 주택전시관 화면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주택전시관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공급금액 미포함)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높이, 폭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는 주택전시관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 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환기유니트, 환기디퓨저,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단위세대 내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겸용 제품으로, 본 공사 시 냉방 전용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추가선택품목으로 제공되며 장비사양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단위세대 내 표기된 가스 배관 위치는 본 공사 시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주방가구 상부장의 크기 및 깊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단위세대 내 표현되는 스마트IoT 기능 홍보 및 구현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미구현 또는 성능 개선 등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단위세대 내 유상옵션 미선택 시 제공되는 기본바감재는 주택전시관 및 사이버 주택전시관(<https://www.acro.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사이버 주택전시관만을 관람하고 청약 시 경우에 따라서 판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기간 동안 실제 주택전시관을 직접 방문 확인하여 착오가 없으시기 바라며, 착오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 시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평형 및 타입은 사이버 주택전시관 및 공급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주택전시관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되는 모형은 단지 주변부 도로(인도) 및 시설물은 도시계획시설로 인허가 조건으로 인해 실시공사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단위세대 내 설치된 음식물쓰레기 투입장치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본 공사 시 제조사, 장비사양,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은 현재 LX하우시스 창호로 시공되었으나, 외부창호 제조사 선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제조사에 따라 열관류율 및 TDR값은 법규를 만족하는 범위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니 청약/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및 설계관련 유의사항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라 면적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인허가 조건 및 시설물계획(설비, 전기, 소방, 토목) 등의 계획 변경으로 인한 공용부 면적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세대 계약면적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일부 타입에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공급면적 외의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상가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는 대지로서 아파트 대지 내 일정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되어 있으며,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확정측량 등 지적정리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상가는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함으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세대 전용부를 제외한 공간에서 인허가 조건 반영, 현장여건, 시공상 성능 및 마감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수분양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동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가 변경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다.(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기간마다 그 변경내용을 모아서 "수분양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인·허가 및 실 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옥상구조물, 동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난간의 디테일, 측벽문양, 입면, 환기용 캡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도로,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지연될 수 있으며,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인근지역의 개발계획으로 향후 공사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중에 인화겸용 호이스트(리프트카)가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의 사업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랍니다.
- 일부세대는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샘플하우스(Mock up 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샘플하우스(Mock up 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Mock up 세대 사용 이후 원상복구(보수 또는 재시공)를 하고 수분양자에게 인도하기로 합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내 창호의 형태 및 위치는 주택전시관을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1.5미터를 초과하는 발코니 면적은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2006.1.23. 건설교통부)"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하였습니다.
- 대지경계선 내부의 건축한계선을 따라 설치되는 보도는 공공보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대지경계선내 보도 시설유지관리는 사용승인후 입주자 대표 관리주체의해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 동측에서 서측으로 설치되는 공공보행통로는 공공보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공공의 사용을 막는 울타리 설치 등 출입차단조치는 불가하며 이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인허가 의견에따라 소של식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한국부동산원의 추천 결과에 따라서 선정된 것임을 확인바랍니다.
- 당 현장은 지자체 인허가 기준으로 건축물계획이 되어져 있으며, 도시정비법에 따라 임대세대와 일반분양세대는 주거 공용부 및 시설물을 같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 준공 전, 후 개인 또는 임의로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 (세대내부, 외부 및 공용부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 후 최종 인허가 도서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근생시설의 건축계획은 공동주택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동표시, 동번호,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외관, 옥탑디자인, 로고,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과정에서 공급 또는 입주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오렌지로비 출입구, 필로티 출입구와 지하주차장 동별 출입구 등은 동별로, 코어별로 상이 할 수 있으며, 경미한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필로티 출입구와 지하주차장 동별 출입구 등은 동별로, 코어별로 상이 할 수 있으며, 경미한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외부에 계획된 발코니는 준공 이후 개인적으로 변경시에는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로티의 계단과 슬로프는 향후 동별, 코어별 형평성을 고려해서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설계변경 내에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동외부에 계획된 개방형 발코니는 준공 이후 개인적으로 변경시에는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이 불가하며,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경로당 및 어린이집은 인허가시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시설 설치를 통한 용적을 완화 조건으로 반영되어 공공개방시설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외부인의 출입 및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 점 인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내 102동과 103동 사이에서 107동 109동 사이 동서방향으로 공공보행통로(2m 이상) 및 중로2-5, 중로2-9의 접한구간의 건축선내 3m의 보도 공간은 촉진계획 지구단위 조건상 공공성 확보 방안 요청으로 반영되어, 외부인의 출입 및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 점 인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며, 이는 허가청 의견에 따른 것으로 입주 이후에도 유지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해당 사항은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동측 노량진5구역과 면하는 중로2-9호선 15m도로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장기계획에 따라 보차도 도로에서 보행자전용도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기 및 변경 계획안은 현재 미정이며, 이는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공사 중 진입차단기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지반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등의 층고, 지하 주차장레벨, 램프의 위치, 옹벽의 형태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의 계단과 슬로프는 향후 동별, 코어별 형평성을 고려해서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설계변경 내에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동 출입구 및 지하주차장의 주차공간의 주차구획은 시공 중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DA의 위치는 주동 저층에 접하거나 및 단지시설물 주변에 배치되어 주변세대에서는 소음, 진동 분진 및 환경권이 침해되오니 사전에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건축물의 외관 등의 부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 안에서 옥탑, 지붕, 난간, 입면, 단지시설물, 경관조명, 측벽로고 등의 위치가 이동, 추가 또는 삭제 등의 사유로 규모 및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계약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공동주택의 각종 주동 출입구 및 필로티, 지하 동출입구의 디자인 및 구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동표시, BI, 외부색채, 외관 및 옥탑디자인, 옥탑구조물, 지붕, 입면디자인(전후면 창호와 난간, 발코니 길이 및 높이 등), 조명시설, 담장, 안내시설물, 조경시설물, 동출입구, 외부난간 형태, 높이 및 단지조경 등은 설계 및 인허가 조건 이행,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설비의 중계장치는 102,105,106,107,108동, 지하2층 PIT 2개소(105동, 107동), 지하3층 PIT 등에 설치되며, 옥외 안테나는 102, 105, 106, 107, 108동에 지붕층에 설치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벽 및 세대간 벽 등 단열설치부위의 결로 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 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계획은 본 시공시 관계부서 협의사항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준공시 일괄처리 되며 현재 도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본 주택은 관련 법규에 따라 각종 출입구는 오렌지 로비 및 부분필로티로 형성되며, 106, 108동은 전체 필로티를 계획하여, 코아마다 1층 동출입구 구조물 및 층고는 상이할 수 있으며, 저층세대 및 이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당해 시설의 이용으로 인하여 소음 발생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동파의 우려가 있는 저층, 고층 일부 세대용 수도 계량기의 동파 방지용 열선 전원은 공용 전기 요금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유아놀이터, 어린이놀이터 등 커뮤니티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조경 식재 및 시설물의 계획은 공간의 형태와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식재 수종,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조건 이행 및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 등, 야간경관용 조명, 위상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발전 설비, 제연설비, 실외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스카이크립아크로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는 105동 기준층 EV홀에는 3개층마다 비상용 점검구가 설치되며, 비상 구조활동을 위한 출입문으로 해당동 기준층에서는 스카이크립아크로 전용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외부 거실 및 발코니, 침실 일부 창호는 조망권 확보를 위해 유리난간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이사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 이삿짐 및 부피가 큰 짐은 지하주차장 유효높이 및 지하 동출입구 개구부 유효높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4동, 단지 부출입구와 면한 공공시설은 동작주거안심센터(예정)로 계획되어 공사완료 후 기부채납 예정이며, 공공시설 관련사항은 사업시행주체 공사 사항으로 공동주택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 차량출입구 통행 개선을 위하여 차단기가 추가설치, 삭제, 위치 이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도로폭 확대 및 보행로 폭 축소될 수 있습니다.
- 경사지에 위치한 단지 특성상 계단, 경사로 등으로 인해 보행상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세부레벨계획(계단, 경사로, 옹벽, 조경석쌓기, 엘리베이터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돌출부, 개방형 발코니, 부대복리시설 지붕은 배수드레인, 물빠기 구멍 및 선홍통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주동의 평면 및 입면 디자인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외관 특화공사로 인해 설치되는 입면 장식물은 본 공사시 설치위치, 범위, 고정방식, 태양광 모듈, 색상, 디자인, 유리 모듈 등 세부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면특화로 인해 인근 세대의 경우 빛 반사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104동, 106동, 107동, 108동 주동입면과 102동~109동 지붕층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며,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수량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됩니다. 입면 및 배면 저층동 지붕층 태양광 패널 설치로 인하여 시야간섭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 환경권 침해 및 빛반사로 인한 빗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분양 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등 설계관련 도서 및 면적, 치수 등의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등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수분양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동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가 변경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다.(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기간마다 그 변경 내용을 모아서 "수분양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니 충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단계 서울시 우수디자인 사항으로 발코니 설치비용을 완화받기 위해 84타입, 114타입 지상3층 이상 침실1에는 개방형발코니 계획으로 적용 현황에 따라 동일 주택형이라도 발코니 설치위치가 좌우로 다르게 적용되어 있으며, 설치유무 및 벽체 공유 면적 등의 사유로 서비스 면적상 차이가 있고, 주동입면 외벽 마감재에 따라 주변 마감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개방형발코니는 별도의 수전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발코니 내 빗물을 배출하기 위한 우수 슬리브만 설치되며, 빗물이 아닌 오배수 배출 시 하부 세대 및 주동 벽체 오염 등에 대한 피해 복구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 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 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 조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06동 및 108동 주변에는 각 영화초등학교 및 영등포고등학교 후면으로 등,하교 할 수 있는 단지내 학교 가는 길이 인허가 의견으로 반영되어 있어, 인접 세대는 외부인의 출입으로 주변 세대에서는 소음, 분진 및 빛 공해가 발생으로 인하여 생활권 및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 103동 및 107동 주변 외부 엘리베이터 및 계단은 공공보행로 통행을 위해서, 및 108동 정면 및 110동 측면 엘리베이터 또는 계단은 학교가는 길 통행을 위해 단지 지반층 단차간 이동할 수 있는 시설물로 인허가과정에서 계획된 사항으로, 외부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입주 이후 본 단지에서 개방된 시설물로 관리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형 단차로 인한 수직이동 시설물은 본 공사시 인허가청 협의를 통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내에는 2m 공공보행로가 단지 동측 주출입구 방향에서 서측으로 단지를 가로질러 계획되어 있으며, 출입차단 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허가 과정중 허가청 의견에 따른 것으로 입주 이후에도 유지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해당 사항은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2,3번의 엘리베이터와 103동 및 107동 주변 외부 엘리베이터 및 계단은 공공보행로 통행을 위해서, 및 108동 정면 및 110동 측면 엘리베이터 또는 계단은 학교가는 길 통행을 위해 단지 지반층과 완충녹지 단차간 이동할 수 있는 시설물로 인허가과정에서 계획된 사항으로, 외부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입주 이후 본 단지에서 개방된 시설물로 관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입주민의 공공요금으로 부과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형 단차로 인한 수직이동 시설물은 본 공사시 인허가청 협의를 통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에너지절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도시가스를 활용한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이 설치되어, 발생하는 전기는 공용부에 공급됩니다.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가동을 위해서는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하며 제반 운영 및 관리비용은 공용요금으로 부과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가동 시 연도를 통한 백연현상 및 진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열 배출 수 기계실 내부 수증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인허가 조건에 따른 장애물 생활환경인증 수행으로, 현재 예비 인증 심사진행 중으로 예비인증 심사결과 및 준공단계 본인증 의견으로 부대시설 및 1층 지반층 주변 세부 계획 사항이 변경 시공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단지내부 경사로 길이 등이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단차 시설물 및 ELEV 등이 추가 설치로, 아파트 주차대수가 법적 경미변경 이내 수량으로 축소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인허가 조건에 따른 장애물 생활환경인증 수행으로, 부대시설 및 1층 지반층 주변으로 반영될 예정이며, 현재 예비 인증 심사진행 중으로 예비인증 심사결과 및 준공단계 본인증 의견으로 인하여 세부 계획 사항이 변경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저층부 및 주동 입면, 옥상구조물 등의 마감 및 색채계획은 상품 또는 미관 개선을 위해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적법한 설계변경 처리 절차를 통해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단차구간의 조정석 및 토목 옹벽, 화계 마감은 현장 현황 레벨 및 시공 여건, 상품 개선 등의 사유로 설치 타입 및 마감이 변경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경로당 및 어린이집은 인허가시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시설 설치를 통한 용적률 완화 조건으로 반영되어 공공개방시설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외부인의 출입 및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 점 인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103,106,107,108동,110동 저층세대는 영화초, 영등포고 고등학교의 대지 레벨차 및 교육영향평가 의견으로 기반옹벽시설 노출 및 방음벽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로인한 조망권 및 방음벽 유리면 빛반사 등으로 인하여 생활권이 침해당할수 있으니 이 점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외 영화 초등학교 및 영등포 고등학교 경계구간 단차부의 토목 옹벽 및 방음벽은 인허가청 인가조건에따른 사업주체에서 설치한 사항으로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며, 방음벽 기초 구조물설치를 위해 대지경계선 내측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103동 비상차로 주변 공공하수관거가 단지내 대지 내부를 통과하여 계획되어 있어, 인허가청에 인가조건사항에 따라 토지사용승낙서(영구)가 제출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추후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및 주변여건 관련 유의사항**

- 주변단지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차량전조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소음 및 세대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향후 단지 주변 사업지의 개발 계획에 따라 건축물 준공 시 향, 조망, 소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변 공동주택, 오피스 및 기반, 종교 시설물로 인하여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혐오시설, 냄새유발시설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 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총 987세대중 공공임대주택 172세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본 단지내 공공개방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환경권·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배치 및 층별 향·동·호수별 위치, 주변건물의 신축 등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DA(설비 환기구) 동별 제연휀룸, 쓰레기 분리수거장, 경관조명, 공개공간 및 2m 공공보행가로, 스카이크럽아크로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아케이드(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주변 조경구간에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으며, 설치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9동 후면 조경구간에는 주변지역 가스 공급을 위한 지역정압기 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설치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면, 이로인한 사업시행자와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 및 각종 분양홍보물의 배치도상에 표현된 일부DA, 제연휀룸, 실외기실 등은 건물에 매립 또는 인접되어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로 측에 면한 세대는 소음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전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과 함께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배치되므로 이에 대한 지하주차장 및 엘리베이터, 계단등 공용부 시설이 용도별로 배치되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계실/전기실, 부대복리시설, 동출입구, 코어, 지하주차장 및 지상 부위의 차로 등은 임대주택 또는 상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일체의 점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세대 각 실 및 발코니 외부에 설치된 창호에 무리하게 힘을 가하거나 전압, 전출, 이사 시 이삿짐 장비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이삿짐 등은 해당 동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 비상차로는 외부 도로와 바로 연결되고 입주 후 진출입구(보행자출입구)에 이동식 볼라드 설치가 계획될 수 있으며, 소방차 및 기타 서비스 차량의 이용시, 별도의 출입관리가 필요합니다.
- 저층부 및 일부세대는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 필로티, 주민운동시설, 수경시설 등이 인접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층 쓰레기 분리수거장, 펌프실, 열교환기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빗물저류조, 정화조, 사우나와 인접한 세대는 냄새 등의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인도에 인접하여 노출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빗물처리시설, 저수조, 기계실(열교환실), 정화조, 연료전지실, 펌프실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아파트의 지하 3~4층에는 오수정화조는 총 5개소가 설치됩니다. 오수정화조 배기덕트의 위치는 105동, 108동 옥상으로 배출되며, 실시설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접세대는 소음 및 냄새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배치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A(채광, 환기, 방습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연결한 통풍구)는 인도에 인접하여 노출될 수 있으며, 세대에 인접하여 설치시 인접세대는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본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세대에 부과됩니다.
- 입주 후 경관조명, 수경시설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물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스마트홈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과 대지경계에 접한 주변 건물과의 이격 거리를 확인하시고 계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지상, 지하주차장은 차량 및 보행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조건 이행,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인허가 조건 이행,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재활용 분리수거장은 지하3층 주차장내부에 계획되어 있으며, 음식을 쓰레기 대형 투입구는 지상에 입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계획될 예정으로 주변세대에서는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거 시 소음 및 냄새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소형 투입구는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됩니다.
- 아파트 지하주차장 및 기계전기실, 기타시설 등은 인허가 조건 이행 및 기계, 소방, 전기, 토목 등 배관, 배선등을 고려하여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케이드(근린생활시설)의 음식물과 생활폐기물 보관소는 101동 주동하부 지하3층 필로티 및 아케이드(근린생활시설) Ⅱ, Ⅲ 각1층 내부 개소별 계획되어 있으며, 인접호실은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케이드(근린생활시설) 실외기는 101동 지상 1층 배면, 102동 지하3층 주출입구 주변, 103동 비상차로 주변으로 계획되어 있어, 인접 보행시 진동, 소음, 바람 등의 영향으로 보행 및 차량 이동시 불편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대지레벨에 따라 일부실의 전면부 및 후면부 좌우, 각 호실별 위치에 따라 경사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케이드(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대지 여건상 101동 배면부에 편성계획되어 아케이드 Ⅱ, Ⅲ에서 접근성이 다소 불편할 수 있으므로, 사전 반드시 확인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로인한 민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필로티 구간에 설치 예정이나,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위치가 필로티 이외의 위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시공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주·부출입구 위치 및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재활용/일반폐기물 보관소 및 음식물쓰레기 옥외배출구는 준공시 허가기관과 협의하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지 뿌리분배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레벨은 주택전시관 내 비치된 사업인가변경도서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레벨은 단지 모형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공용부위(E/V홀, 계단실 등)의 평면형태 및 마감 등은 동별·라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차입구 및 저층부는 석재, 도장 등 기타 자재로 마감되고 면적 및 자재 적용비율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조건 이행 및 현장여건 등에 의해 색채 등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배수판 및 환기시설이 있으나 기후여건에 따라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바닥은 별도의 구배계획이 없으므로 일부구간에는 일시적으로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입주민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기타 기기 및 비품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급배기구, DA,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세대에는 시설물 작동시 소음, 매연,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카이라운지 출입하는 외부 엘리베이터는 24.2레벨 지반층과, 지하 2층, 지하 3층 지하주차장을 통하여서만 진입 가능하며, 105동 주동 코아 내부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구조로 동선 계획되어 있습니다.
- 스카이라운지 엘리베이터는 공용사용부분으로 운영비용은 입주민 전체 분담합니다.
- 트렌치 시공시 주차구획은 트렌치폭을 포함하여, 트렌치가 측면, 배면에 시공될 시에는 주차라인마킹은 하지 않습니다.
- 화재 발생시 소방차가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설비는 지하3층 설치되며 급속 및 완속 충전설비(콘센트 포함)가 설치될 예정으로, 동·호수별 지하층 입구와 충전설비간 거리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설치위치는 시공과정에서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의 도로, 공공시설(동작주거안심센터)등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은 인허가 조건에 따라 사업 시행주체가 직접 발주하여 시공 후, 해당관청에 기부채납 예정이며, 공동주택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며, 조성계획 및 설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준공은 건축물 준공인가와 별도로 승인이 가능하며, 입주예정일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단지 내 2m 공공보행로(단지 동측에서 서측) 설치되며, 출입차단 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보행로로, 공개공간 조성에 따라 외부인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이로 인해 소음 및 생활권, 환경권이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 PIT 공간은 인허가조건 이행 및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등에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교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민은 인근 학교에 배정할 계획이나, 사업 추진 현황 변동(취소, 해제), 세대수 변경 등 제반 여건변화로 추진계획 및 정책변화 등에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색~광명 고속철도 노선이 일부 단지 하부를 관통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일부 조정구간 하부에 공공하수관거 설치되어 있어 하수관거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용도로 해당구간은 동작구청에 영구적인 토지사용승낙서가 발부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제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주택전시관으로 문의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단지 외부 관련 유의사항

- 대지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 도로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계약세대가 속한 동, 층 및 향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잔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주변도로 및 시설물은 교통처리 계획도에 따라 계획되어져 있으며, 준공시 인허가 기관협의 및 현장여건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도로의 일부구간이 주변도로와의 연계성으로 인해 경사질 수 있으며, 계약 전 현장을 확인하셔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설계되는 옹벽 및 단차 시설물은 주변 레벨 현황에 따라 타입 및 설치 구간이 조정 설치될 수 있으며, 입주후 유지 및 관리의 일체의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합니다.
- 계약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 등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아파트는 주거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져 있으며, 기반시설 등과 접하여 단지가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의 환경권·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도로의 일부구간이 주변도로와의 연계성으로 인해 경사가 모형에 비해 가파를 수 있으며, 계약 전 현장을 확인하셔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서측면은 등용로를 경계로 인접하여 있어, 101~103동 세대는 도로의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103, 106, 107, 108, 110동 남측면은 영화초등학교 및 영등포고등학교와 접하고 있어 학교 방송과 운동장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이로 인한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도로, 공원 등 사업부지내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의 도시개발 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분양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인근 지역 개발 계획으로 향후 공사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자와는 무관합니다.
- 단지안에는 지역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109동 배면에는 도시가스 지역 정압기가 지상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인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여건 유의사항

- 계약 전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시어 비치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6차 도서의 단지 내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 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 과정에서 인-허가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 등은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인지합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도로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단지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맞춰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수경시설, 휴게시설 등의 조경 시설물의 크기, 형태는 추후 실시설계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물놀이터 등)
- 단지 내 비상차량 정차구간 설치를 위해 바닥포장면 관련규정에 따른 도색이 설치되어 미관 저해, 차량 정차 및 시설물 설치에 제한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판상형 및 탑상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환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차로 및 비상차로 구간은 비상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차량 주차구획선이 있으며 이곳에 입주민은 주차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단지 내부 및 외부도로는 소방차량 정차가 가능하도록 계획되어져 있어 이로 인해 식재 및 조경마감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부는 도로의 높이 차이 및 단차가 있으니 계약 전 단지 내, 외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에는 공공장소, 공공보행로, 학교가는길,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필로티, 설비환기구(DA), 발전기실 및 환기구(DA), 전기실, 옥외 음식물쓰레기 투입구, 쓰레기 분리 보관소, 외부계단, 엘리베이터(주동 및 외부), 어린이집, 시니어라운지, 클럽아크로(주민공동시설) I,II,III, 스포츠 코트, 아카데미(근린생활시설) I,II,III, 게스트 하우스, 태양광패널, 옥상 배기구, 보안등 및 조경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빛공해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향후 시공 중 문주, DA, 엘리베이터, 구조물 추가등 외부 시설물들에 의해 용적률 및 건폐율 등은 정비계획 고시변경등을 통해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 3층 및 지하 2층으로 진입하는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주변 동, 지반층으로 출입하는 세대로는 차량 및 비상차량(이식집, 소방차량 등)에 의하여 동출입구 주변세대 등은 소음 및 불빛으로 인하여, 환경권 침해 및 소음, 분진등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용 급/배기기와 같은 설비 환기구가 일부 1층 구조물 또는 인도 또는 주동과 인접 또는 연결되어 있으며 소음 및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6동의 지하층과 105동, 107동 지상층에는 부대복리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주변세대들에서는 부대복리시설 사용으로 인한 환경권 등이 침해 받을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자전거 보관소 등은 설치 위치 및 개소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조, 통풍, 채광, 조망은 동별, 층별, 세대별로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전실 확장 등)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문의 높이는 인테리어 계획의 사유로 사업승인 설계도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 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건축계획에 따라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며,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는 호·라인 및 배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채광, 환기창의 설치 위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차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투시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외부 색채, 포장재, 시설물 등의 세부 사항은 본 공사 시 상이할 수 있으며, 각종 심의 및 협의 등 인-허가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도로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각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보안등 및 야간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입면 특화를 위하여 단위세대의 창호주변에 돌출장식물, 몰딩 입면 커튼월, 태양광패널, 경관조명 등이 설치되어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 세대는 평면도, 입면도 및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차장에는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며, 각 주동 공용홀로부터 접근 및 이용(전기 자동차의 주차금지 등)의 형평성이 맞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 또는 피뢰도선이 설치되며, 일부동 및 일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됩니다. 피뢰침에 의한 미관 저해에 따른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에 의해 일부 저층세대에는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저수조 및 펌프실, 그외 기계, 전기실 및 소방피난 시설등은 실 시공 시 도서와 상이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의한 경미한 사업승인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 시공 시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의 구조 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전실확장 등)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계약자는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 변경, 통합, 사용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각 실 크기 및 위치, 창호크기, 재질, 외부마감은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을 위하여 평면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각종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및 지하층 피트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위치 및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호수별 조망권은 주변 개발 행위 등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당점 후 반드시 주택전시관 모형도 및 설계도서 등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저층부 및 지하층에 계획된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에 필요한 실외기로 인해 인접한 세대의 미관 저해, 소음/진동 피해,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실외 어린이 놀이터, 휴게공간,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스카이라운지,자전거 보관소, 로비정원) 및 수경공간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실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됩니다.
- 단지 내 비상차량동선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토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일부 침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가구류[신발장,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아일랜드장, 욕실장, 욕실거울, 욕조, 위생도기류 등 가려지는 부위] 및 빌트인가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실 시공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현관/발코니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아파트 옥탑, 지붕, 측면에 의장용 구조물, 공청 및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패널 설비등의 시설물, 경관조명설비, 정화조 배기연도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되며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설비는 본 공사 시 수량, 위치, 규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태양광 집광판에 의해 세대 내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 창문에서 태양광 집광판 및 관련 설비가 보일 수 있으며 경관 침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발전에 의한 전기는 주거 공용부 전기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태양광 위치는 주동 지붕 및 일부세대 외벽에 설치되며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시설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민에 의해서 유지 및 관리되며, 일체의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합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는 동과 층이 있으며,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에 따른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제어반(최상층 엘리베이터홀)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제어반 작동 및 카 이동에 대한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이용하는 세대수에 따라 일부 승강기 운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주출입구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동지하, 지하주차장, 기계실, 펌프실, 전기실 등) 벽체 및 천장 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각 실 크기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창호크기, 위치, 재질, 외부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분리수거장의 위치를 사전에 인지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단, 쓰레기분리수거장의 위치 및 규모, 개소는 동별 이용자의 편리성과 수거를 고려하여 인허가 기관의 협의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상·하차 시 차량 및 신호수의 육성에 의한 소음 등이 발생하며,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외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및 커튼박스구간 및 깊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외부 색채, 포장재, 시설물 등의 세부사항은 본 공사 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는 단지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D/A(설비 환기구)의 노출이 있어, 통행로 등의 사람이 유입되는 공간에 인접한 경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및 E/V의 위치에 따라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위치 및 사용상의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의 주출입구가 부대복리시설, 공공개방시설의 출입구와 인접해 있어 통행 및 이용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가칭)“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공용 시설물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출입구 진입 높이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만족하며 유효 높이 이상의 차량에 의한 훼손은 하자책임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무인택배보관소 및 우편물수취함은 각 동 지하3층 로비에 설치 운영될 예정입니다.
-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 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구조 형식 상 지하층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장애에 전기 및 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사업부지 및 주변지역의 전기 및 가스 공급을 위하여 공동주택 부지 내 지상 한국전력공사 개폐기 또는 가스정압기 설치 및 부지 무상제공을 하게 될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지 내 지상 보행도로는 비상시 소방도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공유시설물(놀이터, 보행로 도로 등)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출차주의 경보음 포함) 및 자동차 전조등, 보안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기초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가 주출입구 레벨은 현장 상황에 따라 계획 레벨이 변경 될 수 있으며, 계단 및 램프의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상 이삿짐 사다리차량이 진입할 수 없으며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상도로와 거리가 떨어진 일부 세대의 경우도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일부 지상부 주차장 계획 및 주차램프 위치로 인해 저층부 세대는 소음, 야간 빛공해로 인해 침해를 받을 수 있음을 분양 카탈로그나 모형을 통해 인지하여야 합니다.
- 아케이드(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는 각 101동 1층 외벽, 102동 지하3층 주출입구, 103동 지상 비상차로 주변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실외기는 지하주차장 및 지상에 실외기그릴로 노출되어 있으며, 인접한 세대의 미관저해,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석재 등 천연자재는 일정한 무늬나 색상이 유사색상으로 공급될 수 있으며, 이는 자재 고유의 물성상 나타나는 사항으로 공사상 잘못에 기인한 사항이 아닙니다.
- 실제 시공시 대지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출입구,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 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전에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환기장비에는 외부 미세먼지를 일부 차단하는 청정필터가 설치되며, 필터는 연2회 이상 교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용하시는 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상부 주차장 계획 및 주차램프 위치로 인해 저층부 세대는 소음, 야간 빛공해로 인해 침해를 받을 수 있음을 분양 카탈로그를 통해 인지하여야 합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지상1층 필로티 및 주출입구 인근에 설치(110동은 107동 지상1층 필로티 내)되어 인접한 일부세대는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시공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증감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는 101동 동측, 104동 서측 및 남측, 107동 남측에 위치하며, 유아놀이터는 108동 북측에 위치합니다. 그로인한 주변에 소음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외부 주민운동시설은 108동 정면 외부에 배치되어 주변에 위치한 세대는 소음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필로티와 연계되어 설치되는 정원으로 인해 주변에 위치한 세대는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출입구는 각 동호별로 천장 높이 너비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 사이의 경계는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단지 차별화 계획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경관조명, 영구배수시스템, 기타시설물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하수도 사용료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도난이나 기물파손 및 범죄예방을 위한 단지 내 CCTV 설치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부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으며 기존 현황도로여건 등에 따라 교통혼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와 부출입구에 각 1개소 경비실이 설치되며, 주차관제 및 CCTV관련 시스템은 지하3층 종합방재실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소방시설은 소방법에 근거하여 시스템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개방시설이 배치되어 실외기실이 주동 출입구 및 보행자 통로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등용로 주변 데크면 1,2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지하4층에는 근린생활시설 기계/전기실이 배치되어 있어 입점하는 점포에 따라 소음 및 진동, 냄새 등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필로티 내부 및 주동 출입구에 환기용(제연용)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변에는 지하주차장, 제연팬룸, 지하 시설용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냄새, 미세한 진동 및 기류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단차로 인해 외부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설계변경에 따라 외부 엘리베이터의 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시설로 인한 소음 및 미세한 진동 등의 영향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 **외부 엘리베이터는 공용시설물로 운영비용은 입주인 전체 분담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지상층에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용 구조물, 지하주차장 램프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수 공급을 위한 저수조 및 펌프실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 전기료 등의 비용은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지상에서 직접 진입하는 지하 3층 주차장 주출입구의 차량 통행로 높이는 분리수거 차량 및 택배 차량 진입을 위해 3.2m를 적용하였고(지하3층 103, 106동, 110동 주변 일부 2.7m), 지하 2층 부출입구 차량 통행로 높이는 어린이 통학 차량(승합차 기준) 출입을 위해 2.7m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외 층은 주차장법 시행 규칙에 따라 지하주차장 진입 높이와 차량 통행로 높이는 2.3m 적용, 보행 공간 및 주차구획 위치의 높이는 2.1m로 적용하였으며, 유효 높이 이상의 차량 통행에 의한 훼손은 하자 책임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자(입주자)는 본 계약 외 발코니 확장 부위에 개인적으로 시공·설치한 바닥 단열 및 마감재, 샷시, 실외기실 루버 등의 제반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에서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고층부 세대는 강풍시 옥탑 장식물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음식물쓰레기 세대 내 투입방식 집하시설, 기계실/펌프실/전기실/발전기실/연료전지실/우수저류조/정화조 등이 설치되며, 해당 시설로 인한 냄새 및 미세한 진동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 당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팬룸 및 펌프실/전기실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기계가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음식물쓰레기(대형) 옥외 투입구의 위치 및 개소는 104동 북측, 105동 북동측, 108동 북측에 각 지반층 단차별 1개소씩 입주민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설치예정이며, 위치변경이 불가하고 해당시설로 인하여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모델하우스의 모형상 표기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쓰레기(대형) 옥외 투입구의 위치 및 개소는 동별 이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조합과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시설로 인하여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 공공보행통로는 24시간 개방된 공간으로 일반인이 보행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으며, 단지 내 지상 공공보행통로 구간에는 울타리 및 출입차단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공공보행통로 이용에 따른 인접세대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등)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심의를 거쳐 설치되므로, 위치 및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 내부(천장, 벽체)에는 전기, 통신, 소방 시설물을 위한 배관, 배선, 케이블 및 기타 부속품들이 노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경로당 및 어린이집 옥상지붕에는 인허가청 의견에따라 새մ식소재가 계획되어 있으나, 이는 관리자만 접근가능하고, 관리자에 의해 유지관리 되는 시설로, 입주인 접근이 제한되는 시설이므로, 105,107동 저층 인접세대는 해당사항 인지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아케이드(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는 각 101동 1층 외벽, 102동 지하3층 주출입구, 103동 지상 비상차로 주변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실외기는 지하주차장 및 지상에 실외기그릴로 노출되어 있으며, 인접한 세대의 미관저해,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유의사항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공동주택(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혐오시설, 냄새유발시설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 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 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관 인·허가에 따라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비상 차량 동선 등),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실외 어린이놀이터 등)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입주자는 이의 없이 동의하며, 입주자에게 변경사항에 대해 추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조정공간 등은 실 시공 시 대관 인·허가과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 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 전주 보안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단지주변 도로 폭, 단지 내 도로 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정(수목, 조정시설, 포장),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에 따른 동간거리로 인한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변에는 지하주차장과 제연팬용 환기구 및 비상용 발전기(단지내 보행통로 내) 등 시설 급·배기구가 설치되어 소음 및 냄새, 진동, 연기, 바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사용상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 쓰레기는 단지 내 별도의 수거시설을 사용하며, 차량을 통한 수거 예정입니다.
- 필로티 내부 및 주동 출입구에 환기용(제연용)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되며(101,102,103,109동 일부 복도 ,EV홀 또는 실외기실내 설치), 가스공급사의 가스공급압력에 따라 가스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커튼월록 설치구간에 가스배관이 노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시 위치 및 통행 동선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 배치 현황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남측(영화초,영등고교), 동측 기반도로, KT동작지사 주변레벨이 본단지 지반층 레벨보다 높은 레벨로되어 있어, 해당구간 경계부는 단차 옹벽 시설물로 계획되어 있고, 일부 세대는 단차 옹벽 시설물이 노출되어 보여질 수 있습니다.
- 105동 주동 1층은 스카이크럽아크로를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또는 계단실이 별도 계획되어 있어 인근 동은 소음 및 생활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지하2층 클럽아크로는 계획레벨상 일부 지반층 노출되는 구조로 인접한 저층 세대는 소음, 빛, 냄새 등으로 생활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동별 관련 유의사항

- 각 세대로 진입하는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홀은 주택전시관에 비치된 사업계획변경인가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는 사항으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각 세대별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주택전시관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부출입구 경비실 인근 키즈스테이션 인근에 통학차량 정차를 위한 Drop off-zone과 승하차공간이 설치 예정이오니 배치도에서 위치 확인바랍니다.
- 주출입구에 인접한 동은 차량 및 비상차량(이삿짐, 소방차량 등)의 출입에 의하여 소음, 진동, 불빛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속도 및 사양은 다르며,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동 지하3층 동출입구 로비내에 우편물 수취함 및 무인택배보관함이 설치됩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개선 및 본 시공시 공사여건 등으로 인해 천장고 및 접근 동선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별 송수구 및 상수도소화전 위치가 세대에 인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본 시공시 일부 위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별 외벽에 환기 장치 및 세대 화장실 직배기관 관련 외부마감캡 설치가 되며 위치 및 크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장식커튼월 유리입면 일부는 지정 시트로 변경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주차구획 배치는 커뮤니티 시설 및 동 배치 구조로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동출입구가 필로티 내 또는 동출입구 구조물로 설치되며, 엘리베이터 홀 공용 사용에 따라 프라이버시 및 소음, 진동 등 생활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배선기구류, 월패드, 통신단자함 및 세대분전반 등의 설치 위치 및 수량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배선기구/조명기구/스위치/분전함 등의 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변경되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전기, 설비공사상 일부 노출배관의 시공이 불가피할 경우 실사용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조명 스위치와 월패드의 성능 개선을 위해 구성 및 디자인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의 줄 눈나누기 및 상세는 변경될 수 있으며, 마감 및 기타 사항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통합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 기기의 전화 통화 기능은 KT 일반전화 가입 시 사용 가능하며, 인터넷 전화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지층 주출입구(또는 엘리베이터 홀)에는 환기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내부의 EPS/TPS, PD/AV실의 위치는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PD, EPS, TPS실 등 내측면에는 별도의 마감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각 동의 세대는 보안등 및 경관조명 등(각종 조명)에 의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동의 층변화세대의 공용 PD 및 AV실에는 배관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요금은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본 공사 시 주동 옥상난간대의 디테일 및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PIT 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 영구배수 펌프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1동은 동배치 구조상 지하3,4층 동출입구 연결 동선이 다소 길게 계획되어 불편할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 비치된 사업승인도서 계획사항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101동 1층 5~9호 세대 동출입구는 101동 2호 필로티를 통과하여 진입 가능하오니 이점 사전에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101동 등용로 외벽으로는 교통소음을 차단하기위한 방음벽이 계획되어, 저층부 전방 및 미관에 다소 저해 될 수 있으므로 사전 설치 위치를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101동 지상1층 배면부에는 근린생활시설 실외기가 설치되어 진동 및 소음으로 생활권이 침해 받을 수 있습니다.
- 102동 4~6호 지하2층 주동출입구는 지하2층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 주차장 이용이 불편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단지 출입구와 같은 통로에 계획되어 생활권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에 비치된 사업인가변경도서의 계획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바랍니다.
- 지하주차장의 원활한 교통 동선을 위하여 102동,103동,104동,105동,107동,108동 주동 하부에는 주차 램프 또는 주차 통행로가 계획되어 이로 인한 미세한 진동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103동 지붕에는 제연배기팬 및 105동 옥상 지붕에는 스카이라운지 실외기가 설치되어 인접세대는 이로 인한 진동,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103동 저층부는 근린생활시설이 배치되어 있어 소음이나 업종에 따른 음식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저층부 세대에 근린생활시설 실외기로 인하여 소음, 진동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필히 주택전시관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103동, 104동, 107동 지하주차장 전배면 레벨차로 인하여 주동 주변 및 하루 램프 계단 및 경사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104동 지하2층, 지하 3층은 스포츠클럽 및 다함께돌봄센터 계획으로 주차장에서 동출입구 접근이 다소 길게 계획되어 있어 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 비치된 사업승인도서 계획사항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105동, 107동 지상1층은 시니어라운지, 스카이크럽아크로 출입구, 어린이집이 계획되어, 이로 인한 생활소음 및 냄새 등으로 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105동, 108동 옥상에는 정화조 연도가 설치되어 인접세대는 냄새 등의 생활불편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측벽 및 각동 옥상 구조물의 경관조명으로 인하여 인접 세대는 빛산란 등에 따른 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주동 외벽 및 옥상의 경관조명 위치 및 개소는 상품 개선 등의 사유로 이동, 확대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4,106,108동 외벽 및 각동 지붕층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이로인한 빛 산란 등으로 세대 내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104동, 105동 주변으로는 조경 수경 시설이 계획되어 저층세대는 수경시설내 빛 산란 또는 세대 비침 등으로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102동 지하2층 동출입구는 근린생활과 인접하여 계획되어 이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4동, 105동, 109동 주변 외부 기반부지에는 종교(제척)부지가 계획되어 신축 예정으로 입주후 종교시설로 인하여 저층세대 조망 간섭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104동은 전면에는 선큰주변으로는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으로 ELEV가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인하여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이 간섭될 수 있습니다.
- 110동은 지반층 레벨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으로 경미한 변경 범위내에서 레벨 변경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경사로 등이 추가되거나 내부 경사로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10동은 단지 외부 레벨 계획상 비상차량 전조등 및 학교가는 길 이동동선 계획 등의 사유로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 모형 및 비치된 사업승인도서 계획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지상1층 층고 및 천정고는 오렌지 로비 및 부분필로티, 전체 피로티 적용 구분에따라 다르게 계획되어, 코아별 동출입구 구조물의 규모 및 천정고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주택전시관 모형 및 분양 홍보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2동,103동,104동,105동,106동 지하 2층 주동 주변으로 커뮤니티 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지하주차장 주차 이용 동선이 다소 불편할 수 있으며, 특히, 102동, 104동 주변은 피트니스, 스크린골프라운지, 스포츠클럽 시설이용에따른 생활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4동과 105동 사이에는 허가조건 층고 및 스포츠클럽 채광을 개선하기 위한 선큰이 계획되어 있어, 이로 인한 소음 및 냄새 등으로 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101~103동 저층 세대는 외부 도로와 인접하여, 이로 인한 차량 전조등 및 생활 소음 등으로 생활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101동, 102동-103동 사이 지하층에는 전기실, 기계실이 배치되어 지상층으로 DA가 세대 인접 돌출계획되어, 저층세대는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매연으로 생활권, 환경권이 침해될수 있습니다.
- 105동 29층은 스카이크럽아크로가 계획되어 있어, 직하층 및 주변 세대는 부대시설 이용에따른 진동 및 소음, 빛산란 등에따른 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동 필로티 하부에는 부대시설 및 관리사무소 냉난방을 위한 실외기실이 계획되어 장비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5동, 108동 옥상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및 정화조 배기연도가 설치되어 시스템 가동 시 인접세대는 냄새 및 진동 등의 생활불편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103,106,107,108동,110동 저층세대는 영화초, 영등포고 고등학교의 대지 레벨차 및 교육영향평가 의견으로 기반옹벽시설 노출 및 방음벽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로인한 조망권 및 방음벽 유리면 빛반사 등으로 인하여 생활권이 침해당할수 있으니 이 점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107,108,109동 중로 2-9방향(노랑진5구역방향) 주동 측벽은 건축선 3m 구간과 접하여 있고, 건축선 3m구간은 인허가청 의견에따라 보도 포장으로 계획되어, 인접세대는 이로인한 생활권이 침해당할수 있으니 이 점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고, 추후 이로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관련 유의사항

- 건축법상 피난계획을 위해 59타입 이상은 아래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실외기실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가 계획되어 있고, 그 59타입 미만 주택형별은 직통계단 추가 또는 발코니 바닥 하향식 피난구, 옆세대로의 발코니 벽면 비상탈출구가 계획되어 있으며, 타입별, 동별 적용 사항이 상이하므로, 주택전시관 비치된 동평면도 계획사항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108동 301호 세대는 실외기실 루버가 완강기를 통한 대피를 위하여 상부 루버 오픈형 그릴창이 설치되어 상부 세대와 디자인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각동 출입구 게시판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본 공동주택 천장높이는 2.4m으로 시공됩니다.
- 하향식 피난구 비상탈출구는 비상시 사용을 위한 것으로 피난에 방해되는 물건 등을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과 방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의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타입의 평면이라도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료 및 외부창호 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시공되며, 층별, 세대별 실제 느끼는 소음과 진동은 차이가 있을 수있으며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분양홍보물 등에 기재된 견본세대 CG는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을 위해 전형형 발코니 확장형으로 표현하였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발코니 미확장세대는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니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및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며 해당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84, 114타입 개방형 발코니, 51형 발코니2, 테라스하우스 테라스는 설치 제외)
- 84, 114타입 개방형 발코니는 입면계획상 지상 3층 이상 층별 침실1의 좌우측면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측벽 벽체 공유 면적 및 외장 마감재 등의 사유로 내부 안목치수 및 주변 마감은 층별 위치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바랍니다.
- 기본 제공되는 계약용량 및 분전설비 외에 계약자에 의해 증설되는 전기용량, 배관 및 배선 등은 직접 공사해야 하며, 시공 부주의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승강기 출입문과 세대 현관문이 마주하고 있는 세대 등에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의 높이, 폭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 실측 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승강기의 경우 시공 과정에서 디자인 및 일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클럽아크로, 스카이크럽아크로 등)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일조, 진동에 의한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바랍니다.
- 109동 후면 조경구간에는 주변지역 가스 공급을 위한 지역정압기 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설치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인한 사업시행자와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36, 44, 51타입은 복도 벽면에 가스관과 가스계량기가 노출되어 설치되며, 84T, 140P타입은 실외기실에, 그외 타입은 발코니(보조주방)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6, 44, 51타입 다용도실 및 그외 타입의 발코니(보조주방)는 옵션가구 선택에 따라 건조기와 세탁기를 나란히 배치할 수 없으며, 2단 설치만 가능하므로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 및 복도에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세대분전반은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침실 내 노출된 장소에 설치되며 타입마다 위치가 상이할 수 있고, 본 공사 시 설치되는 제품의 위치 및 디자인은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불박이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상부장, 하부장 등), 빌트인가전, 욕실장, 욕실거울, 욕조, 위생도기류 등]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기본 제공되는 주방가구 내부 수납장 하부 천정면의 마감판은 설치되지 않으며, 주방 상판 하부면의 노출이 발생하며, 이는 하자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 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세대내 천정물딩은 하자예방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도배홀이 설치되며 주택전시관 디자인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정에 급수를 위한 분배기가 설치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됩니다.
- 단위세대 실별 가구(장롱, 불박이장 등)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단위세대 실별 가구의 실사이즈는 마감, 단열재 두께의 차이 등으로 도면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내부구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창호 유리난간의 디테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주택형에 따라 창호의 크기 및 위치 방향, 마감자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을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공사여건 및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거실, 복도, 침실 등의 벽체마감(마감두께 등)으로 인하여 본 아파트의 인허가 도면보다 안목치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일부 콘센트는 2구 중 1구가 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로 설치되며, 의류관리기 등 고용량 가전 사용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타입 및 평면에 따라 조망, 스위치, 콘센트 등의 배치 및 수량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시공되었으며, 층별, 세대별 실제 느끼는 소음과 진동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조경계획은 인·허가 과정,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옥상의 환경을 고려해 실시설계 및 시공시 확정됩니다.
- 디자인월 마감은 부위별로 패턴이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디자인월 마감은 자재 특성상 시공 이음매가 노출될 수 있고, 이음면의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보조주방) 내 바닥 단차의 경우 타입별 및 옵션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발코니의 난간대는 향후 디자인 및 시공성,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문의 높이는 인테리어 계획의 사유로 사업승인 설계도서와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건축공사에 따른 줄눈나누기, 마감 및 기타 사항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통합단차함, 스위치, 콘센트, 난방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문틀이 높게 시공되어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목창호에 손끼임 방지 장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단위세대 욕실 벽 및 바닥, 현관바닥, 주방 벽, 발코니 바닥 등의 타일 나누기는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중 가설용도의 인화경용 호이스트(리프트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샘플하우스(Mock up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Mock up 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Mock up 세대 사용 이후 원상복구(보수 또는 재시공)를 하고 수분양자에게 인도하기로 합니다.
- ACRO 스마트홈 앱을 통하여 세대 내 기기 제어(조명, 난방 등)가 가능하며, 월패드와 연결되는 세대기기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변경할 경우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주방TV, 욕실 스피커폰, 전동빨래건조대 등 제공되지 않는 품목에 대하여 계약 후 임의로 추가 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배관/배선 공사의 유형(매입, 노출)이 현장 여건 및 자재 수급 등의 사유로 위치별,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한국전기설비규정 등에 준수하여 시공됩니다.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비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일부 설치되며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재의 점검구 위치 및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비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 및 복도에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천장에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됩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및 커튼박스 크기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청소용 수전, 드레인 및 선흡통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용 세대 및 인접 세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결로 낙수와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정내부의 설비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노출배관의 시공이 불가피할 경우 실사용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 발코니에 수전, 드레인이 설치 시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면 다변화를 위하여 일부 세대에 설치되는 개방형발코니에는 별도의 수전이 설치되지 않고, 빗물처리를 위해 자연 배수 슬리브만 설치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테라스형 단위세대의 테라스에는 수전이 설치되지 않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부부욕실과 공용욕실의 배수 배관은 층상배관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부세대 영향이 없는 각 동별 최하층 세대는 층하배관으로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주방에 설치되는 음식물쓰레기 세대 내 투입방식의 하부 가구장에는 밸브 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므로 수납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투입 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환기 장치로 인해 가동 시 각 실내 환기구를 통해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위치 및 수량은 성능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 장비에는 외부 미세먼지를 일부 차단하는 청정필터가 설치되며, 필터는 연2회 이상 교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용하시는 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창호,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 사용, 장시간 음식물 조리, 실내 빨래 건조대 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보조주방)에 건조기 사용 시 온·습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어, 결로 및 기타 하자방지를 위하여 환기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환기시스템의 설치위치에 따라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에 환기캡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보조주방)에 건조기 사용 시 온·습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어, 결로 및 기타 하자방지를 위하여 환기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세대의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 천장에는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 및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36/44/51타입의 경우 거실에 천장노출형 환기 장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세대 환기 장치의 위치는 타입별로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보조주방), 실외기실 및 거실 천장에 설치되며, 하향식피난구 위치에 따라 세대 환기 장치 위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배기팬은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화장실의 배기팬은 천정 노출형 팬이 설치됩니다.
- 단위세대 주방 및 화장실의 배기 방식은 당해 층 직배기 방식으로 별도의 공동 배기덕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 벽체, 장식 커튼월 입면, 계단실 또는 세대 실외기실 내부 등에 노출되어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가스계량기는 실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배관의 세대내 원활한 인입 및 가스계량기 설치를 위해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보조주방)의 천장과 및 마감면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전기쿡탑 선택 유무에 상관없이 가스배관 및 차단기는 기존 위치에 설치됩니다.
- 단위세대의 발코니에 설치되는 가스계량기는 실시설계 및 시공 시 그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의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되며, 발코니에 일부 가스배관이 노출 설치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렌지후드 상부장은 수납 목적이 아닌 후드 장비 및 자동식 소화기 등이 설치되는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가 운전소음이 발생함에 따라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운전 시 반드시 실외기실 그릴을 개방해야 하며, 그릴을 닫고 운전하거나 그릴창 주변에 물건을 적치할 경우 성능 및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운전 시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소음 및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설치 시 별도의 실외기 고정대 및 에어가이드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설치 시 배관, 실내기 및 실외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시공사와 무관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본 아파트의 시공사에게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입주자가 별도로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 실외기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기본으로 제공하는 냉매배관이 천장형으로 설치되어 스탠드형이나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가 불가합니다. (입주 후 스탠드형이나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를 원하는 경우 별도의 공사가 필요함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미선택 시 LG브랜드 기준으로 천장형 냉매배관이 제공됩니다. 입주 후 타사 에어컨 제품 설치 시 호환성 및 성능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확인하시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싱크볼 하부장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됩니다.
- 주방가구 중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배관, 싱크배수관 등이 노출되어 설치되므로 그에 따라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합니다.
- 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약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세탁기가 설치되는 공간 및 발코니 수전, 실외기실에 선풍통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양변기 인근 매립형 휴지걸이를 설치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는 노출형 휴지걸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드레스룸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 현관, 비확장발코니, 욕조하부, 샤워부스 등에는 바닥난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에 개별보일러 및 세탁기/건조기가 설치되는 경우 개별보일러 점검 시 점검공간 확보를 위해 세탁기/건조기의 위치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 지역으로 세대 내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보일러가 설치되며 보일러를 통한 난방 및 급탕공급하는 방식이 적용 됩니다. 세대 외벽에는 보일러 연도가 설치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흡서버, 분전함, 콘센트, 디퓨져, 바닥배수구, 소방설비 및 배선기구류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에어컨은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욕실 세면대 높이는 바닥타일 기울기로 인해 일부구간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51이하 타입 일부세대는 거실 또는 침실1의 커텐박스 깊이는 발코니 스프링클러 설치배관 공간확보 요구로 H:40mm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 콘센트나 스위치 등의 전기/통신 기기 직상부에 못을 박거나 드릴로 구멍을 뚫을 시 배선 손상으로 인하여 기기 동작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장 내 음식물 쓰레기 이송설비 장치가 설치되므로 해당 부위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합니다.
- 일부세대에 발코니공간에 PD점검을 위한 노출형 슬리브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팬트하우스 세대의 테라스 적용구역(아래층의 지붕)은 공용공간으로, 해당세대의 전용공간이 아니므로 공용설비,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출입 요구 시 반드시 개방해야 하며, 등기를 통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하며, 이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또한 테라스에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개조하여 구조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방수층을 손상시키는 등의 사유로 아래층 세대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시설복구 및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팬트하우스 세대 테라스 일부에는 옥상 조형물을 위한 구조물, 환기,景观조명, 설비배관덕트, 통기 등의 공용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보조주방) 및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터닝도어의 프레임 형태, 개폐방향, 하드웨어등의 사양은 제조사에 따라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관련 유의사항

- 지하주차장, 필로티 하부, 복도 등의 공용부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세대창고는 설치예정수량이 전체 세대수에 미달하여 전 세대에 세대별 1개씩 제공되지 않으며, 배정기준 및 운영방식은 입주 후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결정 후 운영될 예정입니다.
- 일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개방시설의 배수는 단지 내 레벨차로 인해 배수펌프를 통하여 배수 후 메인 배수관에 연결될 수 있으며 배수펌프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센터, 시니어라운지, 어린이집 등 주민 부대복리시설은 “갑”과 “병”이 협의한 공사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항목을 제외한 기타 기기 및 비품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저수조, 우수저류조, 정화조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상 자전거 보관소, DA(기계·전기실·발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및 쓰레기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해충, 연기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규모,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외부인 대상으로 영업하고자할 경우 별도 시스템 구성 및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단, 시니어라운지 및 어린이집은 지역 커뮤니티시설로 계획되어 단지 외부인 이용 가능)
- 부대복리시설 선권 구역에는 냉난방 시스템 가동을 위한 설비(실외기 등), 부대복리시설 환기용 그릴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작동 시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외부 입면 및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 형태, 창호의 크기 및 위치, 기능,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내외부 마감재, 집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규모 및 배치형태, 창호의 크기 및 위치, 기능,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내외부 마감재, 집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인 주민공동시설은 스카이라운지, 피트니스, 필라테스룸, 스크린골프라운지, 스포츠코트, 런드리라운지, 사우나(남/여), 라운지카페, 프라이빗다이닝룸, 프라이빗시네마, 스테디룸, 에듀라운지(작은도서관), 시청각실, 게스트하우스, 어린이집, 키즈라운지(다함께돌봄센터), 시니어라운지, 생활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되며,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운영 및 관리 등 구체적인 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에 대해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단지 설계 상 부대복리시설은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동사용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각 시설별 해당 부대복리시설의 면적은 각 해당 시설의 기타공용 면적에 분배되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된 조경시설은 인계 후 안전, 보건, 관리 등은 관리주체의 의무이며, 관리소홀로 인한 냄새, 오염수, 해충, 고사,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부주의로 인한 조경육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민의 책임입니다.
- 주방시설을 갖추고 있는 라운지카페, 스카이라운지, 키즈라운지(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시니어라운지 운영 시 소음, 매연, 냄새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부대복리시설 배수는 단지 내 레벨차로 인해 배수펌프를 통하여 배수후 메인 배수관에 연결될 수 있으며, 배수펌프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센터, 시니어라운지, 어린이집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부대시설 입면 및 선권 구역에는 부대시설 환기용 또는 제연용 그릴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작동 시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은 공간개선 및 본 시공시 공사여건 등으로 인해 천장고 및 접근 구획, 창호크기, 위치, 재질, 외부 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실외기실 위치는 본 시공시 세부 용량 검토 등을 통해 위치 변경 및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적절한 설계 변경처리 절차를 통해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문주는 부대복리시설에 포함되며, 문주 규모, 디자인은 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공간 및 지하 2층 다목적 창고는 입주민을 위한 A/S센터(입주지원 및 하자보수 등)로 일정기간동안 운영될 수 있으며 운영기간 종료 후 시설원상 복구하고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및 본인증 의견으로 부대시설 및 공용부, 지반층 계획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대비 일부 계획사항이 변경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는 인허가청 인허가 조건사항으로 추후 적절한 설계 변경 처리 절차를 통하여 변경처리 예정입니다.
- 시니어 라운지, 어린이집, 사우나용 보일러가 설치되며 작동시 외벽에 설치된 보일러 연도에서 연기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시설 유의사항

- 단지 내 공용 시설물, 지형 단차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시설물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환경권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사업시행인가 변경 또는 차량 및 보행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차량 출입구 형태,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 시 해당 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일부층은 무근콘크리트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헬륨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은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하게 할 수도 있고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헬륨 및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에 인접한 세대는 기계가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가로변 시설물이 신설, 추가되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 시설물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파의 우려가 있는 저층, 고층 일부 세대용 수도 계량기의 동파 방지용 열선 전원은 세대가 아닌 공용 전기 요금으로 부과합니다.
- 주거 공용부분인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옥상, 전실 및 홀 등은 주거 공용부분으로 개인적으로 전용화하여 사용이 불가합니다.
- 지질조사 등을 통해 지하수위가 높은 경우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영구배수공법을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관리비용(배수펌프 사용에 따른 전기료, 하수도 사용료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 조례에 따라 단지에서 배출되는 영구배수는 계량 후 배출되며, 일정량 초과 배출시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가로수로 인한 조망 등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 헬스 등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01동 남동측에 수경시설을 포함한 휴게정원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2동 남서측과 남동측에 수경시설 및 수경시설을 포함한 휴게정원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3동 북동측에 수경시설을 포함한 휴게정원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4동 남서측과 남동측에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5동 북서측에 어린이놀이터, 남서측에 수경시설을 포함한 휴게정원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6동 북서측에 수경시설을 포함한 휴게정원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7동 북측에 휴게정원, 남측에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8동 북측에 어린이놀이터, 남측에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에 설치되는 티하우스의 경우, 냉난방 시설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외부에 볼라드, 가로등 보차로 구분용 헬스, 각종 게시판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가 및 지상 주차장 주변부 녹지대는 면적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모형,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용 복도의 사용시간은 단지 내 상가 협의회(가칭)와 단지 내 주민협의회(가칭)의 협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재난, 안전, 소방과 관련하여 관련 법에 따라 시공 시에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구역은 기본 및 확장형 주차 구역으로 계획되었으며, 설계변경 및 현장여건에 따라 주차면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구역은 기본 일반주차 구역으로 설치되나, 현장여건에 따라 확장형 주차구역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일주택형의 경우라도 지하 출입구와 지하 엘리베이터 홀의 형태는 동별, 호수별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기 바랍니다.
- 현장여건에 따라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 구획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관련 없이 법규 및 각종 심의에 의해 적용되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에 의한 과태료 부과/민원(각종 분쟁 등)은 당사와 관련이 없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시공 시 단지 주변의 레벨 변경에 따른 단지 내 레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 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세대창고는 별도 마감이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덕트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 및 이용, 시설에 대한 사항은 입주자협의회 등에서 결정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지하층에 계획되어 있는 세대창고를 이용할 경우 보관물품이 습기 등에 의해 훼손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상수도, 지역난방, 도시가스, 소방시설물, 전기, 통신시설물등 건물 유지 시설물의 관리 및 범위는 건축물 구조에 따라 혼재하여 시공될 수 있으며, 관리주체 결정시 상호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주 형태, 위치, 마감재, 컬러 등은 예시이며, 시공시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혼재되어 있는 건축물로 일부 공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이 존재하며, 해당 지역의 전기 공급이 공동주택 공용부에서 공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전기요금이 관리비 항목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이에 대한 어떠한 민원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연료전지실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은 공용관리비로 부과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5동 29층에는 스카이크럽아크로가 있으며, 102동과 104동 사이의 지하3층에는 스포츠코트가, 지하2층 클럽아크로에는 피트니스, G.X룸, 필라테스룸, P.T룸, 사우나(남/여), 클럽아크로라운지, 멀티룸(주민회의실), 라운지카페, 프라이빗다이닝룸, 런드리라운지, 스크린골프라운지, 스크린골프룸이 있으며, 104동 지하2층 클럽아크로에는 프라이빗시네마, 레슨룸, 키즈라운지(다함께돌봄센터)가 있으며, 106동 지하2층에 위치한 클럽아크로에는 에듀라운지(작은도서관),스터디라운지(남/여), 프라이빗스터디룸(남/여), 스터디룸, 시청각실, 프라이빗오피스룸, 프라이빗스튜디오가 있고, 103동 지하2층에는 게스트하우스가, 각 105동, 107동

- 지상1층에는 시니어라운지,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습니다. 101동 지하3층에는 생활지원센터, 근로자휴게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104동 인근 주차입구에는 지상1층에 키즈스테이션이 계획되어있습니다.
- 지하3층 계획되는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의 상부에는 전기차 화재시 연기배출을 위한 덕트 및 팬이 설치되어 가동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계획중인 기계실, 전기실, 연료전지실, 정화조, 빗물이용시설, 음식물쓰레기 세대 내 투입방식 집하시설등의 유틸리티 시설은 장비 효율등을 고려하여 위치 및 면적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공용부 천정에 가스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안전공사 검토 결과에 따라 배관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아파트 총 1,445대수가 적용되었으며, 부대복리시설 및 기계실, 전기실 등 계획 및 대지 레벨 차에따른 계획으로 단지별, 동별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동 이용 상황에따라 해당 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에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전 주택전시관내 배치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6차 도서로 계획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사업시행인가 변경 또는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 주차장 주차면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주차 구획선은 도서상의 실선을 기준으로 구획되어 있고, 주차구획 표기시 좌,우측 부분에 편차가 생길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용시설물 위치 및 개소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지하층(동지하, 지하주차장, 펌프실, 전기실 등) 벽체 및 천정, 바닥 마감 및 레벨 및 구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차량 출입구 및 램프 지붕의 형태,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 3층 동출입구 주변 동별 1개소 조업주차가 계획되어 있으나, 일부동은 코어별 접근성이 균등하지 못하여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 3층은 전동이 연결되는 구조로 우편물수취함 및 무인택배함 등이 설치되어 다른 층의 지하 주차장 동출입구 대비 다소 크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내부 색채 및 세부 마감계획은 상품개선 및 품질 확보 등의 사유로 사업주체 협의하여 변경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입주 관련 유의사항

- 국토교통부의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 하는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의 살수반경 기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및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입주예정시기와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도로) 등의 준공시기는 상이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준공인가(준공허가 전 사용허가 포함)시에만 입주가 가능하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마감재 수준 향상이나 개인선호도 반영을 원할 경우 잔금 완납 후 계약자 스스로 적법하게 인테리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시기와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도로, 지하공공보도시설) 등의 준공시기는 상이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사용승인 허가시에만 입주가 가능하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준공 후 3년 내 기간내에서 단지 내에 일부 공간을 입주지원센터(가칭), 및 현장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등) 요구, 시설 이전/축소 등을 계약자(또는 입주만)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요구할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바닥 마감재 자재 특성상 찌힘, 벗겨짐 등의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당 현장의 설치되는 수전의 물이 싱크대 및 하부장 외부로 물이 떨어지게 되면 마루 또는 벽체등에 오염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하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감자재 업체의 문제(생산차질, 단종, 부도 등)로 입주 이후 AS시 기준 시공되어있는 마감재와 다른 대체품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세대 내부 구조 벽체 임의 제거 및 PD주변 벽체 훼손, PIT의 불법 확장은 불가하며, 이로 인한 원상복구 책임 및 하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 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 욕실 및 발코니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하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문 개폐시 간섭이 있을 시 있음.)
- 『입주예정일은 공정의 변경, 조기준공,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굴, 정부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의 사유에 따라 앞당겨지거나 지연되는 등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분양계약서 등에 따라 입주예정일이 통보된 경우 입주예정일의 변경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될 수 없으며,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분양홍보물 관련 유의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분양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택전시관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등의 예정 사항은 개발계획의 변경,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사항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자료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 바라며, 계약체결 전 주택전시관,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각종 분양홍보물 및 단지모형 등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BI),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각종 시설물, 음식물 대형 투입

- 구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업주체 및 시공자와는 무관합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분양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 모형(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CG, 단지구획선 등) 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 CG이미지[스카이라운지, 가든스퀘어카페, 키즈라운지(다함께 돌봄센터)]의 테이블/의자 등의 이동식가구, 디스플레이(액자, 화분 등), 일부 조명(벽부등, 팬던트)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 및 표기된 것으로 향후 품목의 디자인, 종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을 위하여 제작한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 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사업주체에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시공사와는 무관하며, 사업 주체, 국가기관, 지자체 및 기타기관의 사업으로 추진 중 변경, 지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 바랍니다.
-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 및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되며, 하자 등에 따른 하자보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 판정 기준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수분양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 담보책임의 종료절차를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연차별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기간 내에 보수요청을 하지 않거나, “시공사” 등이 보수요청에 따라 보수를 완료한 경우, 위 연차별 하자보수 책임 및 하자보수보증 책임은 이행된 것으로 보며, “수분양자”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 또는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권이 소멸되어 “분양자”, “시공사” 등에게 일체의 청구를 할 수 없음.
- “수분양자”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당해 건물의 제반 훼손부분은 “수분양자”에게 보수의무가 있음.
- 추가 선택품목 중 완제품으로 시공된 전자제품의 하자는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범위에서 제외되며, 하자 발생 시 제조자 보증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 명칭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명칭, 등 표시, 외부 색채와 외부 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 법규변경, 현장 시공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등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 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 및 추가 될 수 있으며 개인 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 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기타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 등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때 공급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사용검사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 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분양신청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분양사무실에 비치된 입주자모집공고, 설계도서, 계약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평면, 아이소, 세대VR, 모형, 사이버 주택전시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입주자모집공고 및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업 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741(도곡동 180-3번지) 아크로 리버스카이 주택전시관

■ 사이버 주택전시관 : <https://www.acro.co.kr>

■ 분양문의 : 02-529-0205

※ 주택전시관은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주택전시관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 약관에 따르며, 본 공고와 공급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